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책임연구원 : 송이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서울시에서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울,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아동은 정책으로부터의 영향이 지대한 대상 집단 중 하나이나 투표권이 없고 관련 정책결정에서 배제될 여지가 큼니다. 정책 초기 단계에서 아동영향평가를 토대로 기획될 수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고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동영향평가는 아동과 이해당사자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실행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합니다.

현재 성북구, 강동구 등 국내 몇몇 지자체에서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제도 형성 초기 단계입니다. 실효성 있는 아동영향평가가 가능하려면 평가 지표를 보편타당하게 만들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아동영향평가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서울’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이 건강, 안전, 여가, 역량, 보호, 돌봄 등 주요한 영역에서 아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단순하고 포괄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제도 구축에 대한 기본 밑그림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귀한 자문을 해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과 인터뷰에 응해주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 공무원분들, 그리고 이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모든 아동들이 살기 좋은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큰 행보에 이 연구가 진일보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7년 12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Contents

I 서론_01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8
 - 1) 연구 방법 8
 - 2) 연구 추진체계 10

II 아동영향평가의 목적과 확산 _ 11

- 1. 아동영향평가 개념과 목적 13
- 2. 아동영향평가의 지구적 규범과 확산 17

III 해외의 아동영향평가 분석 및 시사점 _ 21

- 1. 국제기구 및 단체 아동영향평가 특성 23
 - 1) 유니세프의 아동영향평가 23
 - 2) OECD의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25
 - 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영향평가 27
- 2. 국가별 사례 분석 28
 - 1) 영연방 국가 28
 - 2) 스웨덴 34
 - 3) 핀란드 35
 - 4) 호주 38
 - 5) 뉴질랜드 40
- 3. 시사점 42

IV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분석 및 시사점 _ 45

1. 국내의 영향평가 분석	47
2. 국내 아동영향평가 분석	54
1) 국내 아동영향평가 현황	54
2) 서울 성북구	57
3) 서울 송파구	59
3. 시사점	64

V 아동영향평가 추진체계와 지표(안) _ 67

1. 아동영향평가 추진체계(안)	69
1)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69
2) 아동영향평가의 주체와 당사자 참여	75
3) 아동영향평가의 방법: 방법론의 확립	78
4) 아동영향평가의 시기와 적용	80
2.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안)	85
1) 아동영향평가 필수 요건	86
2) 분야별 평가지표(안)	91
3. 아동영향평가 질적 지표 결과 제시 방법	94

■ 참고문헌 _ 99

■ 영문초록(Abstract) _ 102

■ 부록 1 : 기본 체크리스트(공통) _ 107

■ 부록 2 : 설문지 _ 111

표 목차

표 Ⅰ-1	공무원 인터뷰 대상자 특성	9
표 Ⅰ-2	전문가 델파이조사 대상자 특성	9
표 Ⅳ-1	영향평가의 종류 및 내용	48
표 Ⅳ-2	영향평가의 장단점	50
표 Ⅳ-3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용	52
표 Ⅳ-4	아동영향평가 대상	56
표 Ⅳ-5	아동친화예산 대상의 예	57
표 Ⅴ-1	아동영향평가 대상 분류 예시	73
표 Ⅴ-2	아동 및 이해당사자 만족도 조사 설문 예시	77
표 Ⅴ-3	정량평가, 정성평가, 만족도 조사 수행 주체	78
표 Ⅴ-4	입법절차에 의무화되어 있는 영향평가들	82
표 Ⅴ-5	서울시 아동친화도시의 영역별 과제(김진석, 외 2016)	85
표 Ⅴ-6	평가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87
표 Ⅴ-7	체크리스트 포함 내용	88
표 Ⅴ-8	주요 영역별 아동대상 사업 예시	88
표 Ⅴ-9	분야별 주요 지표 예시	89
표 Ⅴ-10	참여·존중 정량·정성 지표	90
표 Ⅴ-11	건강·안전·여가·역량·보호·돌봄 정량·정성 지표	92

그림 목차

■ 그림 I-1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개념 모형(1)	7
■ 그림 I-2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개념 모형(2)(김진석 외, 2016)	7
■ 그림 V-1 ■ 평가 방법	77
■ 그림 V-2 ■ 아동영향평가 제도 및 지표 수립시 고려 사항	80
■ 그림 V-3 ■ 평가 절차	81
■ 그림 V-4 ■ 평가 관련 주체	81
■ 그림 V-5 ■ 아동영향평가 제도와 아동친화예산 제도의 연계 도식화	83
■ 그림 V-6 ■ 아동영향평가 제도와 아동친화예산 제도	84
■ 그림 V-7 ■ 서울시 정책과 다양한 아동집단	91
■ 그림 V-8 ■ 지속가능성 지표의 위계적 구조	95
■ 그림 V-9 ■ 평가 결과	97
■ 그림 V-10 ■ 지속가능성 영향평가의 거미줄 다이어그램	98

연구요약

□ 연구배경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과 ‘아동종합실태조사’¹⁾가 진행됨
- 유엔 아동권리 협약 조건으로써의 아동영향평가 제도.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조항은 입법·정책부서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행정부 각계 부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유엔아동권리사회 일반논평 제5조)
- 아동영향평가의 필요성:
 - ① 인권의 차원. 아동도 다른 사람들처럼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고, 차별받지 않아야 함. 이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함.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임
 - ② 이익과 효율 증진.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아동 인권을 증진시키고, 이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법과 정책을 만들고, 전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에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이익을 줄 수 있음
- 국내 아동영향평가 현황과 관련해서 성북구는 2014년 5월 29일 국내 최초로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2월 아동 관련 사업 42개를 선정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²⁾

1) 서울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

2) 아동의 권리와 함께 하는 성북이라는 정책 과제 실행을 위해 아동영향평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 중임

□ 연구목적

- 정부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 이를 통해 실질적인 아동인권보장을 토대로 한 아동친화도시를 마련하고자함
- 평가대상과 관련 쟁점, 평가지표 전달체계의 방향, 평가 책임자(담당자), 컨설턴트 등의 역할 제안과 함께 정책 개선 방향(안)을 도출함
- 아동과 아동 내에서도 취약한 아동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용이하게 하고 더 나아가 효율적이고 공적인 예산·비용 집행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함
- 정책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함으로써 사후 대책 마련 위주의 기존 아동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인 정책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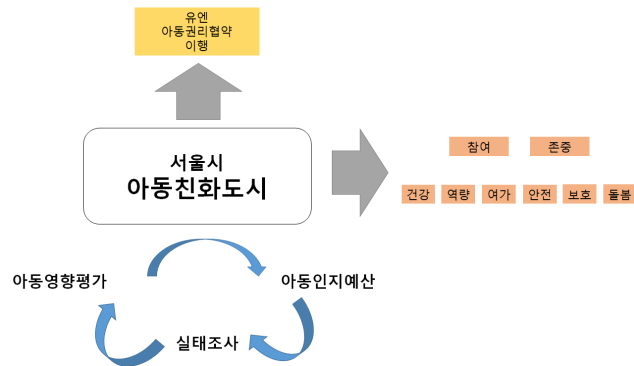
□ 연구방법 및 방향

- 문헌 검토: 기존의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현황 검토
- 해외 아동영향평가 사례 조사 및 분석: 국제기구 및 해외 국가들의 아동영향평가 사례 분석
- 델파이 조사: 아동·복지·가족 정책 등의 정책·행정·학술 전문가 7명(2회)
 - ①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에 있어서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우선순위 요인에 대한 조사
 - ②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인들에 대한 정량화 방안 도출

□ 연구방법 내용 및 방향

-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토대로 아동영향평가 추진체계 방향 정립
- 이해당사자인 아동 중심의 정책실행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초석 마련과 함께 아동과 이해당사자들의 만족도 향상 방안 도출
-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아동친화도시와 맥락 공유. 아동영향평가와 아동실태 조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지표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인권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익과 효율의 증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하는 것을 포괄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법/조례, 계획, 단위사업 등은 주로 큰 그림을 보여주는 포괄적 정량 지표로 평가하고, 세부 사업들은 아동 대상 사업인지 아동 대상 사업이 아닌지를 구분하여 정성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지표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아동대상사업의 경우 아동 집단 내의 형평성과 참여를 강조하고, 아동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아동 권리 보장과 존중을 좀 더 강조함



■ 그림 1 ■ 서울시 아동영향평가의 역할

- 아동영향평가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 사항과 4대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아동영향평가 제도 수립시 언제(시기), 무엇을(대상), 어떻게(방법), 누가(주체), 왜(목적) 평가하는지 명확해야 함

평가목적				
권리 보장 + 복지 증진				
법·조례		평가 대상	사업	
사전평가		평가 시기	사후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총괄부서·사업부서 공무원		평가 주체	전문가	

■ 그림 2 ■ 아동영향평가 제도 및 지표 수립시 고려 사항

- 평가대상: 법·조례/계획/사업(단위, 세부), 직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 참여, 존중과 6개 영역(건강, 안전, 여가, 역량, 보호, 돌봄)
- : 평가대상이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경우 아동 집단 내의 형평성과 참여를 강조하고,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 아동의 권리 보장과 존중을 강조
- 평가시기: 사전평가, 사후평가

○ 아동영향 평가 지표 필수 포함 내용

필수 내용

〈권리〉

-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참여〉

-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 계획서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는가?
- 계획서에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가?



〈권리에의 영향(효과)〉

-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 특정 아동의 권리를 침해시킬 우려가 있는가?

□ 평가 방법 및 내용

- 양적평가와 질적평가의 혼합이 필요함. 아동영향평가는 공공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는 아동의 다차원적인 권리와 이익에 대한 포괄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함

○ 정량평가 방법

- ① 관련성: 아동과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례/계획/사업인지를 체크함
- ② 특수: 물리환경적 특성(장애, 학교밖, 시설 등)과 사회경제적 특성(저소득, 한부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집단의 요구도와 형평성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체크함

분 야	대 상	관련성	대 상 명	일반 권리/복지		특수	지 표 명
				참여	존중	요구도 형평성	
건강 안전 여가 역량 보호 돌봄	법 조례	간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O X	O X	O X	아동 참여 비율
		직접	아동복지 지원 조례	O X	O X	O X	아동 의견 반영 비율
	계획	간접	시민건강국 사업계획	O X	O X	O X	건강 시설 이용 가능 아동 비율
		직접	아동건강관리 사업계획	O X	O X	O X	특수 집단 아동 수혜율
	사업	간접	건강도시 환경조성	O X	O X	O X	전체 영향 집단 중 아동 비율
		직접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O X	O X	O X	학교밖 아동 비율

○ 정량평가 내용:

- 사업의 경우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어 개별적인 사업별 지표구성은 어렵고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평가지표와 같이 통일된 지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소수집단³⁾ 아동 비율의 경우 직접대상에 ‘전체 아동 중 소외집단 아동 비율 → 형평성 측정을 위해서는 전체 비중에서 소수집단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의 반영이 필요함
- 존중영역의 사업중 간접대상 지표에 연령대별 의견 반영 비율 → 연령대별 의견 반영 여부는 대상 아동의 연령대 고려시 적절한 지표임. 아동친화도

3) 장애, 시설, 학교밖, 미혼모, 탈북, 다문화, 성소수자 등

시 평가와 연계하여 18세 미만으로 설정시 영아,유아,초등 및 중·고생이 혼합되거나 연령대에 따라 참여의 요구나 권리에 대한 생각이나 참여방식, 요구내용에 차이가 있음

- 사업부문 : 법·조례/계획에 비해 다양한 사업과제별 영향평가가 필요함. 따라서 지표의 개별성(혹은 통일성) 문제 발생 → 실태조사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표나 실적지표는 사전영향평가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공통지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법/계획 부문 직접대상 지표 : 제도부문 특성 고려, 수요자 의견반영 수준 지표로 동일하게 적용함

- 전체 아동 중 소외집단 아동 의견반영 비율(참여·존중영역과 동일)
- 소수 집단별 아동의견 반영 비율 (형평성 평가 지표로 동일하게 적용)
- 연령대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참여·존중영역과 동일)

② 법/계획 부문 간접대상 지표: ‘아동 의견수렴’ 과 ‘욕구 수렴’ 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함

③ 사업부문 직접대상 지표 : 아동의 예상 참여율/수혜율(지역 청소년 인구 대비 혹은 증감율). 사업 부문은 성과지표로 효과를 비교 검증할 수 있으나 사전영향평가지 내용 성과지표 검증 제한. 직접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비율을 토대로 효과의 보편화에 대한 예상되는 기대치 측정이 필요함. 해당 영역별 확인대상 지표요소는 사업과제에 따라 다양하나 핵심적인 가치/목표 선정 및 적용이 필요함

④ 사업부문 간접대상 지표 : 전체 수요자 대비 아동의 예상 참여율/수혜율. 간접대상 사업의 경우 전체 연령대를 포함하므로 이 중 (소수)아동 지원의 비중 확대가 필요함

○ 정성평가 내용: 해당 사업에 아동 권리 침해 요소가 있는가, 계획 수립시 아동 이익을 고려하였는가 등

- UNICEF에서 제시한 아동 권리를 중심의 필수 내용을 포괄하며, 전문가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함
- 기존에는 정성평가표 작성시 ‘그렇다/아니다’ 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매우그렇지않다’ 등으로 세
분화 할 필요가 있음

- 정성평가 점수 산정 방식

: -2(극도로 부정적 영향력)에서 +2(극도로 긍정적 영향력)의 범위로 평가함

○ 전문가 평가 강화: 정성평가시 전문가 평가가 필요함. 전문가는 사회보장기
관, 아동보호기관, 가족지원서비스기관, 보육과 건강센터 기관 관련자, 심리
학자 등을 고려함

□ 만족도 조사와 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 반영

○ 영향평가시에 아동당사자 및 이해당사자의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는 아동의 참여와 존중을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음과 동시에 보다 정확
한 평가 및 정책 개선을 가능케 함

- 기존의 시스템(엠보팅 등) 활용이 가능함

영향평가 수행 (정성평가)	① 정책 만족도 조사(사전/사후) ②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작성 영향평가 수행 (정량평가)
전문가	아동 · 이해당사자	총괄부서·사업부서

■ 그림 3 ■ 평가 방법

○ 평가절차의 개념도는 다음 제시된 ■ 그림 4 ■ 와 같음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사전평가	심층사전평가 대상사업 선정	심층사전평가	사전 만족도 조사
· 총괄부서 · 전문가	사업부서 → 총괄부서 검토	· 총괄부서 · 전문가	· 아동참여기구 · 전문가 · 사업부서	· 관련 아동 · 이해당사자 (온라인 혹은 모바일 참여)
모니터링	사후평가	심층사후평가 대상사업 선정	심층사후평가	사후 만족도 조사
· 아동참여기구 · 아동, 이해당사자 · 총괄부서 (온라인 혹은 모바일 참여)	사업부서 → 총괄부서 검토	· 총괄부서 · 전문가	· 아동참여기구 · 전문가 · 사업부서	· 관련 아동 · 이해당사자 (온라인 혹은 모바일 참여)

■ 그림 4 ■ 평가 절차

-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평가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중요한 것은 지표를 통한 평가와 함께 해당 결과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임.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나 집단의 의사를 정치의 장에 반영하는 것 이른바 투입(input)의 단계와 더불어 산출(output)의 단계임. 이것은 정책이 예산 및 인력과 함께 구체화됨.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현실에서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음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서울시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울,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서울4)’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자람, 다양하고 풍성한 즐길, 격차 없는 온전한 누림’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⁵⁾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⁶⁾(서울특별시조례 제6374호, 2017.1.5.,

-
- 4) 서울시는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수립(‘16.7.)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17.1.5) 하는 등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옴. 또한, 취약아동의 복지·보호 중심에서 아동의 인권·참여 등으로 정책영역을 확장함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개정(‘16. 9.29)
 - ▶서울시 아동명예시장 위촉(‘16.10.), 서울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MOU체결(‘16.5.)
- 5) 유니세프(UNICEF)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기본 이념을 주창함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ies)는 아동 권리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아동 권리: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 지역사회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 가족·지역사회 및 사회생활에 참여할 권리, 건강관리와 교육 등 기본적 서비스를 누릴 권리, 안전한 물을 마시고 적절한 공중위생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착취·폭력·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권리, 친구를 만나고 놀 권리, 동식물을 위한 녹색공간을 가질 권리,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 문화 및 사회 행사에 참여할 권리, 민족·종교·소득·성·장애유무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유엔회의에서 최초로 발의됨.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유니세프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education/korea/choice_city.asp)
- 6) 서울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17.1.5),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개정(‘17.6.)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유도 등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서울’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으며 2017년 7월 아동친화도시팀을 신설함

제정) 해당 조례의 제10조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의 일환으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과 ‘아동종합실태조사’ 7)를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요구를 전달할 통로가 마땅치 않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들의 관점을 정책과 법체계 전반에 반영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진석 외, 2016). 국내에서는 2013년 11월 서울시 성북구가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으며, 그 후 2016년 1월 완주군이 국내 시·군 단위에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 또한, 강동구는 2017년 3월 22일 국내에서 7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⁸⁾. 그런데 이처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필요한 10가지 원칙⁹⁾ 중 하나가 바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¹⁰⁾이다. 아동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입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Paton and Munro, 2006: 7), 이것이 아동권리와 복지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아동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근거하고 있는데¹¹⁾, 아동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우리는 다음 3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권의 차원이다. 아동과 관련된 이슈들은 아동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책결정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동은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책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더욱 클 수

7) 서울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인권, 발달, 건강, 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

8) 그 외의 국내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시는 서울시 성북구 (2013.11), 전라북도 완주군 (2016.1), 부산시 금정구 (2016.9), 전라북도 군산시 (2016.10), 서울시 도봉구 (2016.11), 서울시 송파구 (2016.12), 서울시 강동구 (2017.3.22), 오산시 (2017.5.31), 전주시 (2017.7.26)임

9) 아동의 참여,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평가, 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10)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15~’ 2019)에 주요 추진과제로서 2019년 아동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음

11)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조항은 입법·정책부서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행정부 각계 부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이사회 일반논평 제5조).

있기 때문에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둘째, 이익과 효율 증진의 차원이다.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이 아동 이익에 부합되는지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에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정책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셋째,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 차원에서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아동영향평가는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는 정책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정책 실행에 있어서 책임성을 부여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보편적 차원의 필요성에 더하여 우리는 한국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23개 주요 국가 중 5년 연속으로 최하위인 상황이다(염유식, 김경미, 이진아, 2013).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궁극적으로 아동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정책적으로 개선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의 이유 때문이라도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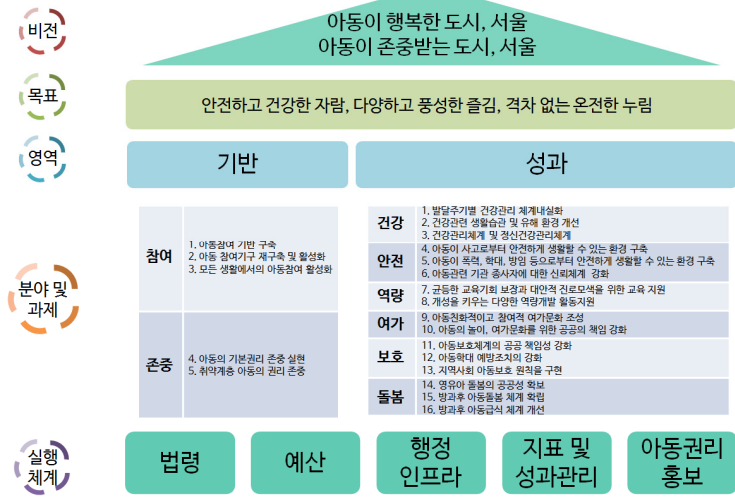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각 자치단체의 의지와 인력, 여러 형태의 자원과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동영향평가를 잘 이해하고, 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정책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정확한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충실히 지키고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평가에 대한 이해와 지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정부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성북구, 강동구 정도만이 사전, 사후 아동영향평가를 실행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정책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등을 검토해 왔는데, 이에 더하여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법, 제도 그리고 재정 투여 등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연구는 서울시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아동영향평가 지표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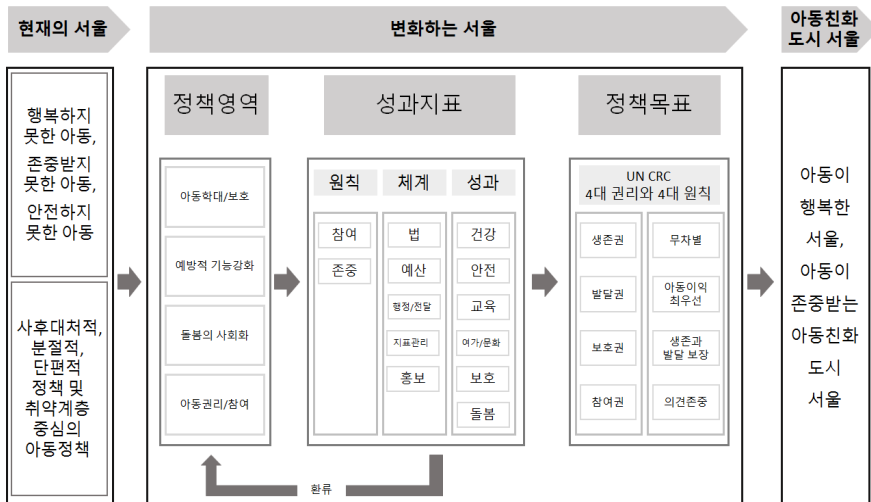
시 차원의 정책을 평가하고 아동의 관점과 권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아동영향평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평가체계의 정립도 도모하려 한다. 그래서 아동영향평가의 주체와 시기, 또한 방법 및 대상과 관련된 쟁점, 평가지표 전달체계의 방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정확한 아동영향평가를 돕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안)을 도출, 제시하려 한다. 이를 통해 아동과 아동 내에서도 취약한 아동 집단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이고 공공성이 함양된 예산·비용 집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정책이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함으로써, 기존의 사후 대책 마련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려 하고, 이를 통해 아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초석을 마련하려 한다.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친화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이를 유지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즉 서울시의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의 일환이며 따라서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틀 내에서 아동영향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로드맵(김진석 외, 2016)에서 제시하는 틀을 준용한다.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로드맵에서는 기반영역과 성과영역(outcome)으로 주요 영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그림 1-1■**과 **■그림 1-2■**에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로드맵의 개념 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아동영향평가 지표는 평가를 하는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과 평가의 범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때 서울시가 추구하는 아동친화도시 실행과제들을 준거로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로드맵은 아동의 참여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면서 건강, 안전, 역량, 여가, 보호, 돌봄 영역 각각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아동영향평가는 해당 영역에서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권리와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틀로 할 필요가 있다.



Ⅱ 그림 I-1 Ⅱ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개념 모형(1)



Ⅱ 그림 I-2 Ⅱ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개념 모형(2)(김진석 외, 2016)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1) 연구 방법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기존의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를 검토한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관한 중점 사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활용 가능한 서울시 내부 자료를 사용해서 아동영향평가와 아동친화도시 진행 방향을 살펴본다.

둘째, 해외와 국내의 아동영향평가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먼저 유니세프와 OECD, EU집행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나 단체의 사례를 살펴보고, 아동영향평가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유명한 영연방 국가들과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유럽의 몇몇 국가들 그리고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은 오세아니아 대륙의 사례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국내의 여타 영향평가들을 분석, 이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히 논하고,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영향평가를 검토한다. 이러한 국내외를 포괄하는 관련 사례들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통해 이들이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이를 준거로 새로운 아동영향평가지표를 어떻게 만들어야하고, 더 나아가 아동영향평가를 어떻게 수행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려 한다.

셋째,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다. 아동, 복지, 가족 정책 분야의 정책·행정·학술 전문가를 7명 내외로 구성하여,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UN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기준으로 하여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의 우선순위 요인을 조사한다. 아울러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인들에 대한 정량화 방안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영향평가 지표(안) 개발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아동, 복지, 가족 정책 분야의 정책·행정·학술 전문가들에게 연구내용 및 체계, 선정된 주요 지표 내용의 적절성, 영역과 구성의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위해 착수 자문회의,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관련 자문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 공무원 인터뷰 대상자 특성

- 서울시 자치구 아동친화도시팀 팀장 및 담당주무관 6인
- 조사 시기: 2017년 8월~10월

표 I-1 공무원 인터뷰 대상자 특성

	소속	담당분야	직위
1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팀장
2		성인지예산	주무관
3		성별영향분석평가	주무관
4	자치구1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영향평가	팀장
5			주무관
6	자치구2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영향평가	팀장
7			주무관
8	자치구3	아동친화도시	팀장
9			주무관

□ 전문가 델파이조사 대상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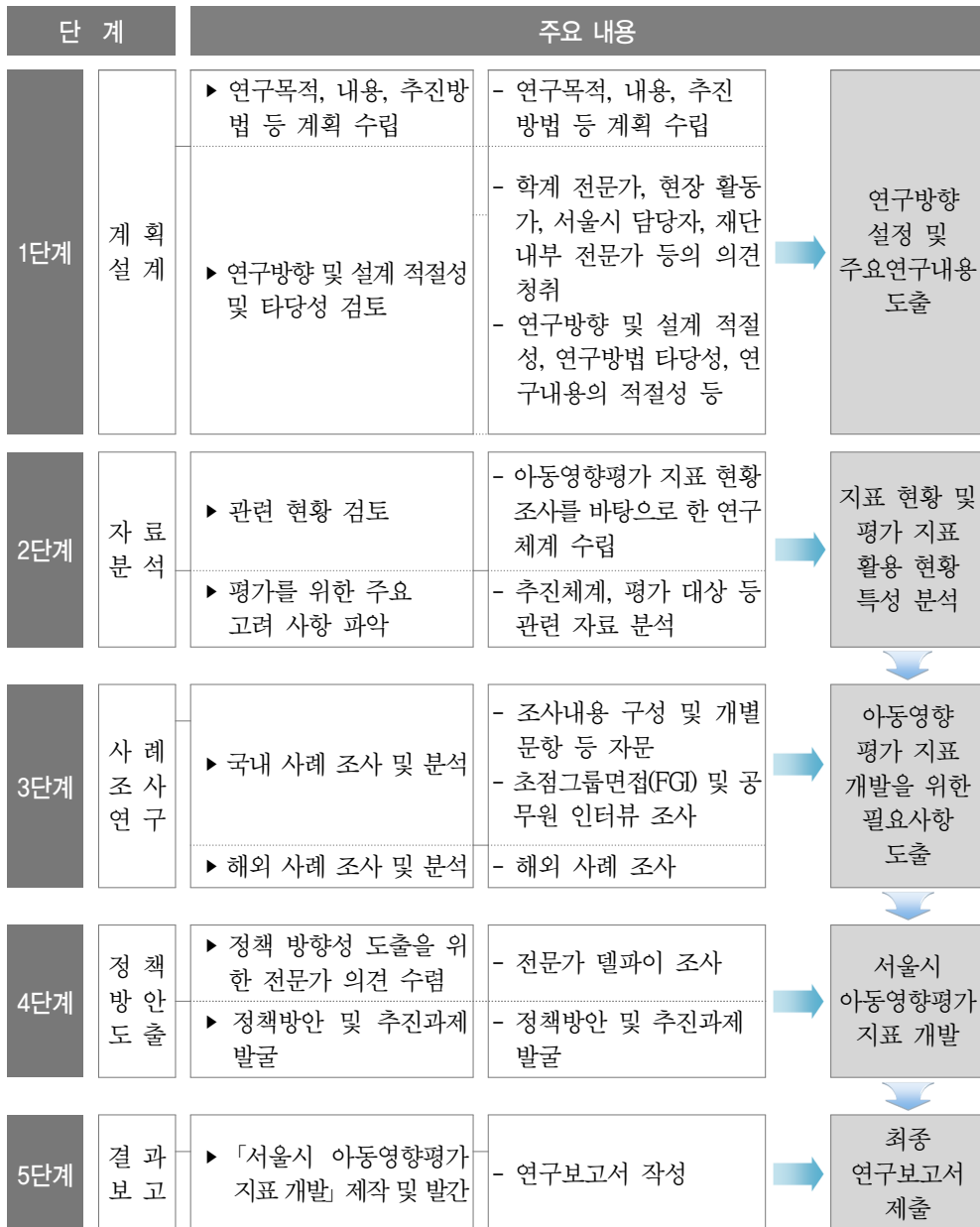
- 관련 전문가 7인
- 조사 시기: 2017년 9월~10월

표 I-2 전문가 델파이조사 대상자 특성

	분류	분야
1	학계	아동복지
2	학계	아동복지
3	학계	아동청소년
4	현장	저소득 아동 및 시설
5	현장	아동 역량 및 여가
6	현장	아동복지
7	자치구공무원	아동친화도시

2)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II

아동영향평가의 목적과 확산

1. 아동영향평가 개념과 목적
2. 아동영향평가의 지구적 규범과 확산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아동영향평가의 목적과 확산

1. 아동영향평가 개념과 목적

OECD(2010)에 따르면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는 정보에 기반을 두고 계획된 정책 수단의 부작용, 비용, 결과 등을 평가하는 것이고, 이는 정책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이다. 아동영향평가도 기본적으로 영향평가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는데, 아동영향평가 개념은 1987년 프리만에 의해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1989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보다 빠른 것인데, 이것의 기본 아이디어는 공공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프리만(Freeman, 1997)에 따르면 정책을 만드는 이들은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를 생각해오지 않았고, 아동과 관련된 입법에 있어서도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들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¹⁾.

이후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화가 나타났다. 몇몇 학자들은 아동영향평가를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 및 프로젝트(project)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혹은 그 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영향의 범위를 특정 집단의 아동이나 혹은 일반적인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전반적인 것이라 규정한다(Sylwander, 2001). 또한 아동영향평가는 정책, 입법 또는 기타 정부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에 미치는 모든 잠재적

1) 사실 아동영향평가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같은 민간 영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현재 아동영향평가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체를 대상으로도 진행되고 있다(UNICEF, 2013).

직간접적 영향들을 밝히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도구(Whalen, Kotze and Pollack, 2015: 2)로 정의되기도 하며, 그동안 정책 개발이나 실행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너무나 쉽게 간과되어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공정책의 장에서 아동 가시성을 높이는 것(Hanna, Hassall and Davis, 2006: 32)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국내의 경우, 서울시의 아동영향평가 개념규정을 검토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10조²⁾에서 아동영향평가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에서도 아동영향평가는 성북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은 해외의 아동영향평가 개념과 큰 차이는 없다.

기존의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인권의 차원이다. 아동은 다른 사람들처럼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이다(Paton and Munro, 2006: 7). 아동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부에서 이들은 정책형성과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있고, 아동과 관련된 이슈들은 정치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잘 포착하기 어렵다(Mason and Hanna, 2009: 3). 하지만 아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좋은 정책은 그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호지킨(Hodgkin, 1999)은 인권이라는 커다란 맥락에서 아동영향평가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①아동은 투표권이 없어서 정치과정에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②정부구조와 정책 과정은 아동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③아동을 담당하는 부처나 기관도 각기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와 이익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또한, ④아동은 사회에서 성장과 성숙과정에 있는 가장 큰 집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정부의 정책에 더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 제10조(아동영향평가)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이익과 효율 증진의 차원이다. 아동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 정책을 비롯한 것들의 영향력이 아동의 최고 이익에 부합되는지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경감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Paton and Munro, 2006: 7). 호주의 아동·청소년 커미셔너에 따르면 아동영향평가를 통해 아동 인권을 증진시키고, 이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전달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동영향평가는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이익을 줄 수 있으며 정책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영향평가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한다(Children and 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또한 아동영향평가는 부처 간 조율과 조정을 이끌어내는 통합적 접근을 촉진시키고, 여러 경쟁하는 이익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세대 간 통합을 이끌어 내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Whalen, 2012). 게다가 아동영향평가는 해당 지역이 아동친화도시에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투명성과 책임성 증진 차원이다. 유니세프 캐나다(Whalen, 2012)에 따르면 아동영향평가는 보편의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아동과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기도 한다. 아동영향평가는 종래의 정책이나 국가 프로젝트처럼 국가관료 주도로 일방향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 아니면 직접적인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영향평가는 필연적으로 정책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실제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책임성을 부과하는데 효과적이다.

아동영향평가는 이처럼 아동 인권을 높이고, 아동 및 공동체의 이익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아동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아동영향평가를 제대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일 것이다. 비록 아동영향평가를 분석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문헌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몇몇 이들은 아동영향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에 제시된 다음의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Mason and Hanna, 2009: 10). 이 조건들

중 한국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특히나 눈여겨 볼 것은 충분한 예산과 실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세스, 아동의 참여, 평가의 지속적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 연구의 결론에서 본론의 내용을 종합하며 상세히 논할 것이다.

- (a) 조직적, 정치적 헌신
- (b) 충분한 예산**
- (c) 영향평가를 지원하는 전략과 정책 환경
- (d) 다분야에서 숙련된 지원 그룹
- (e) 분명한 목적
- (f) 투명하고 반복적 시행할 수 있는(replicable) 단계
- (g) 실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세스**
- (h) 정책 초기에의 시행과 과정에 대한 리뷰
- (i) 지역에 대한 양질의 질적, 양적 데이터
- (j) 아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관과 아동의 참여**
- (j)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
- (k) 평가과정이 왜 이익을 주는지에 대한 증명
- (l) 발견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소통
- (m) 지역 아동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 (n) 일회적인 평가가 아닌 지속적인 평가의 수행**

출처: Mason and Hanna, 2009: 10

2. 아동영향평가의 지구적 규범과 확산

아동영향평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지구적 규범이 대륙이나 개별 국가나 지역으로 퍼지면서 확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장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영향평가와 지표 내용의 대부분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래 이 협약은 단기간에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6년 기준 전 세계 196개국에 비준하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나 소말리아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비준하고 있는 셈이다.

기본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4대 기본 원칙을 준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무차별의 원칙이다. 아동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과 상관 없이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다. 이것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모든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생명권, 생존과 발달의 보호 원칙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자기 표명의 원칙이다. 아동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4대 기본 원칙은 4대 기본권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모든 아동영향평가의 핵심 원리로 자리매김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기본권리

- ①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② 발달권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으면서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 ③ 보호권 ▶ 각종 위험, 차별대우, 착취, 학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④ 참여권 ▶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기본 원칙과 4대 기본권이 명문화되면서 아동영향평가는 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 1997년 벨기에 플랑드르 의회가 세계에서 최초로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법을 통과시켰고, 이후 스웨덴과 영연방 국가들이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발전시켰다. 특히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의 아동청소년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모델을 제시했고, 북아일랜드에서도 모델을 발전시켰다. 아울러 잉글랜드도 2005년부터 청소년 부처에서 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했다(Kriegar and Ribar, 2009: 189-190).

아동영향평가는 이후 더욱 확산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나라에서 이것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보수주의 복지 자본주의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도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국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³⁾. 유럽연합의 몇몇 국가들은 아동영향평가를 기존에 존재하는 인권이나 사회적 영향 평가의 일부분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아동영향평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정책과 관련지어서만 실행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국가 내의 모든 지역에서 아동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28개의 회원국 중 여섯 개의 국가들(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영연방 국가)이 법과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아동영향평

3) <http://fra.europa.eu>

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아이들을 고려한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스페인과 같은 국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명문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특이한 것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다고 해서 아동영향평가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점이다.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에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인권이나 사회적 영향력 평가의 한 부분으로 시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아동권리협약을 통과시키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 이것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캐나다 몇몇 지역에서는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2013년 북아메리카 지역 최초로 캐나다 뉴브런즈윅에서 의무적인 사전아동영향평가를 시행했다. 아울러 오세아니아 대륙의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아동영향평가에 관심을 보이며, 이를 시행하고 있다.

III

해외의 아동영향평가 분석 및 시사점

1. 국제기구 및 단체 아동영향평가 특성
2. 국가별 사례 분석
3.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해외의 아동영향평가 분석 및 시사점

III

1. 국제기구 및 단체 아동영향평가 특성

1) 유니세프의 아동영향평가

유니세프는 아동친화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이 기준의 다섯 번째 항목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1. 아동의 참여
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
3.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함
4.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 마련
5. 아동영향평가: 법과 정책, 관련 업무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행 전과 실행과정, 실행 후에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 마련
6. 아동 관련 예산의 확보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8. 아동권리홍보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함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함

유니세프는 이 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체화해서 배포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한 자가 평가를 한다. 이 중 원칙 5. 아동영향평가 항목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조례, 정책, 업무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나올 때 이것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가
2. 지자체 정책결정과정에 아동영향평가가 영향을 미치는가
3. 정기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실행하는가
4. 이 평가가 취약 계층을 비롯한 모든 아동을 포괄하는가
5. 이 과정에 아동이 참여하는가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유니세프 캐나다는 지역별 유엔아동권리협약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제안하고 있는데(Whalen, 2012), 여기서도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는 중앙기구를 먼저 만들어야 하고, 아동권리협약을 가이드 할 수 있는 계획도 설립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역 내 모든 입법 및 행정기관에서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예산 과정을 분석하고 아동 서비스와 관련된 핵심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해마다 아동 권리와 행복도에 대해 보고해야 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훈련과 교육,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 (a)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율할 중앙기구 설립
- (b) 아동권리협약의 실행을 지도할 '지역 아동 계획'(Provincial Children's Plan)을 설립
- (c) 모든 지역 입법부와 규제기구에 아동영향평가 체계 설립
- (d) 지역의 예산 평가를 실시하고 핵심 서비스가 아동에 주는 영향 리뷰
- (e) 매년 아동 권리와 행복도 보고
- (f) 아동권리에 대한 훈련과 교육, 인식에 대한 강조를 증가시킬 것
- (g) 아동권리와 행복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간의 대화 지원

유니세프는 앞서 언급한 기준과 로드맵에 더하여 아동영향평가의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Krieger and Ribar, 2009). 이들에 따르면 좋은 아동영향평가는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장점을 통합해서, 이른바 혼합적 접근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아래의 박스는 이들이 지적하는 아동영향평가에 있어서의 방법론

의 핵심을 요약한 것인데, 이들은 혼합적 접근을 지적하며, 이것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b)에 따르면 방법적 기준을 세운 후에는 기존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고, (c)에 제시된 질적 분석을 해야 한다. 그 후에는 (d)에 나온 것처럼 추가적인 양적 서베이를 시행하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두 접근 발견들의 상호 체크를 통해 두 방법의 장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a) 혼합적 접근: 아동영향평가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결합시킴으로써 평가의 정교함을 증진시키도록 함
- (b) 기존 데이터 분석: 기존에 찾을 수 있는 문헌이나 데이터 예를 들어, 아동 빈곤이나 가구에 산조사 등을 사용
- (c) 질적 분석: 포커스 그룹에 대한 구조화된 인터뷰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양적 데이터 분석에서의 함의들을 검토
- (d) 추가적인 양적 서베이: 질적 분석에서의 함의를 검토
- (e) 반복적 분석: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발견들을 상호 체크하여 계량경제적 모델링이나 지표 개발, 최종 결론이 두 방법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게 함

출처: Krieger and Ribar, 2009

2) OECD의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OECD(2010)에서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에 대한 가이드를 발간하면서 영향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제시했는데, 이는 아동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영향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OECD(2010: 31)는 영향평가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째, 평가 영역 간의 균형과 대칭성을 고려해야 한다. 평가는 여러 영역의 결합이기 때문에, 영역 간 차이를 감안해야 하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실행 부처나 부서 간 관심이나 생각의 차이를 조율해야 한다. 특히 평가과정에서 갈등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풍부한 시간과 자원, 기술을 가지고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의 질을 보장하고 담당자의 기술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훈련과정을 거쳐야 하고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심의절차를 거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학습과 혁신의 잠재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영향평가가 그저 정책이나 의사결정의 사후 정당성 확보의 수단 정

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OECD(2010)의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방법은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영향평가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다.

영향평가가 필요한지를 결정
평가가 수행될 범위를 결정
범위에 합당한 평가도구나 방법론을 선택
- 영향평가에는 여러 범주의 도구들(tools)을 사용할 수 있음(OECD, 2010: 13) (a) 참여 도구: 이해당사자들이나 전문가 외 사람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 ex. 델파이조사, 포커스 그룹 (b) 시나리오 도구: 미래발전 또는 추세들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발전시킬 도구 ex. 트렌드분석(trends analysis), 시뮬레이션, 예측(foresight exercises) (c) 다변량분석: 각기 상이한 분석단위에 기반을 둔 기준들을 통합하게 하는 것 ex. 분석적위계프로세스(analytic hierarchy process), 선호의 순위, 가중합계(weighted summation) (d) 비용편익분석: 비용과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재정적, 경제적 부분을 평가하는 도구 ex. 비용편익분석, 비용-효율성 분석 (e) 계산도구(Accounting tools): 물리적, 경제적 속성 등을 제시하는 도구 ex. 지표, 행복 측정,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f) 모델: 실제 세계의 과정들을 시뮬레이트 하는 도구 ex. 일반균형 모델, 인구학적 모델, 기후 모델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역할을 결정
정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력을 분석
영향력 간의 시너지, 갈등,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파악(OECD, 2010: 23-24)
ex. 다변량 분석 방법을 사용
부정적 영향력을 경감시킬 정책들을 제안
평가결과와 옵션들을 정책입안자에게 제시

출처: OECD, 2010: 7-8 내용 재구성

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영향평가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는 물론 모든 영향평가에 준거될 만한 요소들을 제시한바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2; Corrigan, 2006: 60-61).

해당 정책이나 제안이 다루려는 이슈/문제는 무엇인가
- 어떤 문제를 다루는가 - 현 상황에서 내재한 리스크는 무엇인가 - 프로젝트의 추진동력은 무엇인가 - 이것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 누가 영향을 받는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주요 정책 옵션은 무엇인가
- 기초적 접근은 무엇인가 - 어떤 정책 도구를 고려하는가 - 그 과정에서의 상충요소는 무엇인가
각 선택 옵션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 선택 옵션에 따라 기대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무엇이고 잠재적 갈등 요인이나 불안정성은 무엇인가 - 정책에 따른 결과의 추가적 효과는 어느 정도로 큰가(화폐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제시) - 특정 집단이나 특정 경제영역, 특정 지역에 특히 큰 영향을 주는가 - 영향의 지속성은 어떠한가
제안이 실행된 이후 결과나 영향력을 어떻게 모니터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이해당사자의 협의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02; Corrigan, 2006: 60-61

이들에 따르면 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먼저 평가 대상 정책이 다루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로 인해 영향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해당 정책 실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확인해야하고, 어떤 접근과 방법을

선택하여 해당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 후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정책이 누구에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하고, 이후의 모니터링과 이해당사자 의견 반영까지 고려해야 한다.

2. 국가별 사례 분석

1) 영연방 국가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수행하는 아동 및 여타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에 이어서 여기서는 국가 단위의 아동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한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7개인데, 이들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이다. 먼저 영연방의 국가들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선진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수행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웨덴과 핀란드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아동영향평가 분야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경험과 성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5개국의 사례만 다룰 경우 우리는 자칫 유럽의 사례에만 천착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시야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이외의 대륙 중 아동영향평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오세아니아의 호주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먼저 영연방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자. 아동영향평가가 발전한 아동영향평가의 선발국이라 할 만한 영국이지만, 이들은 연방 수준에서 보편적 영향평가 체계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아동청소년 복지의 모든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단일 정부부처나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이고 둘째, 아동청소년 복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관과 개인 간 이견이 존재하며 셋째, 비용을 고려할 경우 아동청소년 복지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 시행할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박영균 외, 2014: 78). 하지만 영국 정부는 모든 지역에서 정책이나 프로젝트

를 기획할 때 아동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방형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고 있다 (Corrigan, 2006: 76-77).

여러 연령대의 아동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무슨 투입(input)을 했는가
아동들의 관점이 정책이 실행되는 모든 단계들에서 고려되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가
아동이 다음의 요소들로 고통받지 않게 정책제안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빈곤 - 인종주의 - 장애 - 가족과 살 수 없는 것 - 집이 없는 것 - 피난 상태 - 농촌에서의 고립 - 육아 책임 - 가족 붕괴 - 폭력 - 교육받지 못하는 것
정책 제안은 각기 다른 연령대 아동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 4세 까지 - 5-7세 - 8-12세 - 13-15세 - 16-17세
안전과 관리에 대한 표준을 따르고 있는가? 표준은 어떻게 실행되고 모니터링되는가
정책 제안은 어떻게 부모가 아동을 적절한 삶의 수준으로 키우도록 지원하고 있는가
- 물질적/사회적 서포트 - 정보와 조언
지역수준에서 어떻게 장애 아동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제안은 아동의 권리를 실행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가
- 표현,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사생활 보호, 정보접근권

출처: Corrigan, 2006: 76-77

(1)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는 아동·청소년 커미셔너가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법과 정책 그리고 실행상황이 적절하고 유효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복지보다는 아동권리의 시각에 기반을 둔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스코틀랜드 정부의 ‘모든 아동은 중요하다’에 대한 산출 체계(Paton and Munro, 2006: 16-18; 박영균 외, 2014: 80-83)는 다음과 같다.

- (a) 안전: 학대, 방치 또는 위해로부터의 보호
- (b) 건강: 높은 수준의 신체, 정신적 건강 향유 및 건강하고 안전한 선택에 대한 지지
- (c) 성취: 교육과정 중 기량, 자신감, 자존감을 높여주는 지원과 지도
- (d) 양육: 거주하고 성장하는 장소가 양육에 적합하고 고무적일 것
- (e) 활동: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다양한 활동에 참여
- (f) 존중: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g) 책임: 학교와 자치단체 내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참여
- (h) 소속: 다양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가, 주거와 교육이 행해지는 자치단체의 구성원인가

스코틀랜드의 아동·청소년 커미셔너는 발의된 법안과 스코틀랜드 정부나 영국정부, 기타 공공당국이 제안한 정책 그리고 아동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외부 문의에 기반을 두고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박영균 외, 2014: 83). 이들은 평가를 위해 먼저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조항과 영국 정부가 비준한 두 개의 선택의정서와 관련된 부분을 참조하며, 주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아동권리이사회의 일반 논평도 참고한다. 또한 이들은 영국 및 여타 당사국에 대해 아동권리이사회가 내린 최종 견해도 살펴본다(박영균 외, 2014: 83).

스코틀랜드는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체제를 평가에 있어 시발점으로 삼다. 동시에, 이들은 평가대상에 따라 다양한 법적 맥락을 참고한다. 예를 들어 인권보호와 기본적인 자유에 관한 유럽협정, 영국이 비준한 다른 유엔 인권조약, 유럽연합, 영국의회 및 스코틀랜드 의회의 법률 그리고 기타 관련 판례법을 참고한다(Paton and Munro, 2006: 16-17; 박영균 외, 2014: 84).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 커미셔너가 개발한 평가 절차는 2가지로 구성된다.

초기 스크리닝 평가

- 정책이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가, 정책개발과정에 아동이나 기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지,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없는가, 아동인권을 고려한 최고의 수단을 사용하는가 (Paton and Munro, 2006: 19)
- 초기 스크리닝은 즉시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신속하게 처리 됨. 정책 영향에 대한 예비 평가이며, 정식 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이것만으로도 평가에 충분할 수도 있기에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것만 수행해도 됨)

총괄 영향평가

	제안 (Identity)	제안의 명칭
	목표설정 (Map)	무엇이 제안되었고 그것의 결과와 목표가 무엇인지 제시
	자료수집 (Gather)	관련정보와 증거를 수집
	의견수렴 (Consult)	아동과 이해당사자, 전문가와 협의 했는지 확인
	분석 (Analyse)	제안이 아동의 인권에 주는 영향 평가 - 이 제안이 아동의 인권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권을 잘 보장하는가 - 특정 집단의 인권이 특히 영향을 받는가 - 아동 집단 간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는가 - 이 제안은 유엔아동인권협약과 배치되는가? 아니면 이 협약을 촉진하는가 - 예상 영향에 대해 의견 충돌이 있는가 -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보완조치는 무엇인가 - 이 제안이 여타 정책 영역이나 아젠다에 주는 총 영향은 무엇인가
	제안 (Recommend)	결론을 모으고 제안을 만들 - 도출된 최종결론은 무엇인가 - 제안할 것은 무엇인가 - 추가적인 연구나 협의회가 필요한가
	정보공개 (Publicise)	영향평가의 결과를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함 - 평가결과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가 - 볼 수 있다면 어떤 포맷으로 볼 수 있는가
	모니터링 (Monitor)	제안의 영향력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한가

출처: Paton and Munro, 2006

초기 스크리닝과 총괄평가로 구성된 스코틀랜드의 단계별 평가는 타 지역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도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하면서 초기에 간략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동·청소년 커미셔너의 역할이다. 이것이 설립되면서 아동영향평가 전담기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고, 이들은 이와 관련된 법률, 정책, 실천을 검토할 의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영향평가 절차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Paton and Munro, 2006: 14-18). 서울시의 아동영향평가 역시 아동친화도시라는 맥락에서 아동친화예산과 연계하여 법적인 강제성과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그것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스코틀랜드는 완료된 평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또한 강조한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들이나 평가를 도운 이들에게 보내야 하고, 심의 과정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적당한 포맷의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며,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모든 평가결과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동의 권리가 고려된 상황에서 정책이 만들어졌고, 시행되었다는 것은 증명해야 한다(Paton and Munro, 2006: 27). 평가가 출판물의 형태로 나왔더라도, 평가 과정은 끝난 것이 아니다. 제안들이 실제 결과를 내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부정적 영향력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영향평가 과정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다. 영향평가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며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Paton and Munro, 2006: 27-28). 만약 이와 같은 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커미셔너는 스코틀랜드 의회에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고,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서울시에서도 아동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기관의 권한과 강제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웨일즈와 아일랜드

웨일즈에서도 아동영향평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로 실시하는데, 이들은 6가지 요소를 중시한다(LCWG, 2014: 27-29).

1단계: 정책이 무엇이고, 그것의 목표는 무엇인가

- 정책 이익은 무엇인가
- 정책이 아동에 영향을 주는가
- 특정 집단의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가

2단계: 영향력 분석하기

- 그것이 아동이나 가족에게 주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 부정적 영향이 있다면 그것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 영향력을 측정할 틀을 개발했는가
- 정책의 성공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정책의 단기, 중기, 장기적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가
- 아동이나 이해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

3단계: 정책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촉진하는가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오는 권리들과 관련이 있는가
- 아동 삶의 어떤 부분이 정책에 영향을 받는가

4단계: 부처장에게 조언

- 아동권리가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측정되는지, 부정적 영향력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 등

5단계: 결과에 대한 기록과 소통

6단계: 현장에 재방문해서 모니터링하기

- 의도한 영향력을 얻었는지,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이 원활한지, 부정적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행해졌는지, 아동권리를 증진시킬 기회가 있었는지 그리고 추가적 가용자원이 있었는지 점검

출처: LCWG, 2014: 27-29

웨일즈에서는 입법과정을 통해 수행된 모든 아동영향평가가 출판되어야 한다(LCWG, 2014). 입법부의 결정을 통해 수행된 것이 아닌 경우, 모든 완료된 아동영향평가는 웨일즈 정부 홈페이지에 올려야하고 이메일로 이 평가내용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관들은 특정 아동영향평가를 출판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들은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아동영향평가 과정을 개선시킬 지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아동영향평가의 내용과 결론에 대해 피드백을 받기 위해 출판을 하도록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아일랜드의 경우 이 연구의 논의와 연관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아동 부처가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인 방법에 더하여 파일럿 테스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향평가 이전에 사용할 모델을 가지고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평가할 수 있고, 특히나 (a)아동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정책들이나 (b)빈곤이나 불편함을 경험하는 아동 집단들에게 정책이 차등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다(Corrigan, 2006: 49).

2)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외교, 보건 부처가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한다(Sylwander, 2001). 이들의 아동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구조화된 방식으로 실천하는 도구 또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스웨덴의 아동영향평가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한다(Sylwander, 2001: 26).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그 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특정한 문제나 이익 갈등은 무엇인가
사회 혹은 개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책은 어떤 비용과 이익을 야기하는가
어떠한 보상수단이 필요한가

또한 스웨덴의 아동영향평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논점들이다.

어떤 아동 혹은 아동 집단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는가. 아동은 성별과 연령, 사회 경제적 조건, 문화와 윤리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고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음(박영균 외, 2014: 68-69)

정책수립 단계에서 특정 결정이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관련 기관과 논의해야 함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아동에게 미치는 단기적 혹은 장기적 효과
-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가

아동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위의 사항 모두를 검토해야 하고, 아동영향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공유된 것이라면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아동영향평가의 세세한 사항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서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각 평가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Sylwander, 2001).

3) 핀란드

핀란드의 사례를 연구한 타스키넨(Taskinen, 2006)에 따르면, 이들은 스웨덴과 유사하게 아동영향평가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시하고, 아동발달과 복지, 사회관계와 환경안전, 자원할당에서의 아동 분배비율과 평등 또한 주요 항목으로 포괄한다. 핀란드의 아동영향평가는 크게 두 가지 즉 직접적인 영향평가와 간접적인 영향평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직접적인 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자(Taskinen, 2006: 8). 직접적인 영향 평가는 말 그대로 아동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과정에서 변화의 양, 방향, 질 모두를 평가하려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다음의 것을 포괄할 수 있다(Taskinen, 2006: 15).

건강

- 정책이 사고 리스크를 늘리는가 줄이는가
- 정책이 공기나 물을 오염시키는가(먼지, 냄새, 가스, 방사능)
- 정책으로 소음이 증가하는가 줄어드는가
- 정책이 아동의 영양이나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가

사회적 관계
- 정책은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가 - 정책은 부모이외 어른들과의 접촉기회를 증진시키나 - 정책이 아동의 교우 관계와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 - 정책은 자연스럽게 각기 다른 연령 집단이 함께 있게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삶과 이동성
- 아동은 방해 없이 등굣길이나 놀러갈 때 이웃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 정책은 장애 아동의 이동 기회에 영향을 주는가 - 아동의 자발적 스포츠 참여가 늘었는가 줄었는가 - 집과 이웃의 편안함이나 건강이 개선되었는가 - 아동이 놀고, 이동하고, 삶을 영유할 공간이 충분히 제공되는가
일상의 흐름
- 정책이 아동의 취침/기상시간/일상 리듬에 영향을 주나 - 아동은 지속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강요 받는가 - 아동이 반복적으로 기다리게 되나 - 아동이 사생활이나 개인 공간을 제공받는가 - 취미활동의 기회가 증가하는가 줄어드는가 - 정책이 아동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정책은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증가시키나
참여
- 아동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받고 있는가 - 아동이 더 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나 - 아동은 그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된다고 느끼나
평등
- 정책이 아동의 지역적 평등에 영향을 주나 - 정책이 아동의 사회적 평등에 영향을 주나 - 정책이 남녀 아동의 평등에 영향을 주나 - 정책이 인종/문화적 평등에 영향을 주나

출처: Taskinen, 2006: 15

간접적인 아동영향평가는 부모, 가족구성원,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려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Taskinen, 2006: 16).

가족 재정과 서비스

- 고용이나 실업이 증가했는가
- 가족 생활비가 변화했는가
- 공적/사적 서비스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건강, 주거와 레저, 교육, 교통, 쇼핑)
- 서비스의 수준과 가용성이 좋아졌는가(특히 보육, 학교, 모자 클리닉)

공동체와 지역

- 가치, 규범, 행위에 있어 어떤 종류의 변화가 기대되는가
- 삶의 질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 안전이 개선되었나
- 여가의 기회가 늘어났는가
- 지역이 미적으로 아름다워졌는가
- 집값에 변화가 있겠는가
- 변화의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이사를 가겠는가

사회관계

- 사회적 관계나 인구집단의 지위에 변화가 생길 것인가
- 이익 집단 간 갈등이 줄어들까
- 지역 정체성이나 집단의식이 증가할까

출처: Taskinen, 2006: 16

핀란드의 아동영향평가는 ‘의문이 제기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수행해야 한다’라는 원칙 하에서 별도의 프로젝트가 아닌 정책이나 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부분으로 진행된다.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은 ‘어떤 사람이 아주 전문가일 경우를 제외하면 가급적 두 사람 이상이 할 것을 권장하며 평가자는 분석모델과 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아동관련 전문가이어야 한다’라는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는 사회보장기관, 아동보호기관, 가족지원서비스기관, 보육과 건강 센터기관 관련자 그리고 심리학자 등이 있다(박영균 외, 2014: 73).

아동영향평가에 있어서 근간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 정책 시행 후의 변화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책 이전과 이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변화는 질적인 성격을 보일수도, 양적인 성격을 보일수도 있다.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히나 사회적 관계나 편안함, 경험이나 일상을 보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은 바로 질적 접근이다. 그런데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는 질적 방법과

함께 양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이처럼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과 대상과 필요에 따라 혼용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개별 아동에 잘 맞는 표준화된 단일의 측정법을 찾기는 어렵다(Taskinen, 2006: 9).

4) 호주

호주의 아동영향평가에 있어서 이 글이 주목할 만한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그것은 바로 분석대상을 세분화하는 것이다(Children&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아래의 표를 보면 호주는 연령, 인종과 종족, 장애여부 그리고 사는 환경에 따라 아동을 분류해서 정책이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아동의 성격
- 연령에 따른 차이 - 인종과 종족 - 장애 여부
아동이 사는 환경
- 한부모 여부 - 노숙자 여부 - 의료기관이 주변에 있는지 여부 - 온라인에서 매일 돈을 쓰는지, 온라인에 접속이 불가능한지 - 부모 병수발을 하고 있는가 -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가 -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가

출처: Children&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둘째, 호주는 아동영향평가를 간단한 버전과 풀버전 둘로 나누어서 시행하는데, 이 중 간단한 버전의 경우,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매우 간명하면서도 핵심적인 사안을 잘 짚어내고 있다. 그리고 풀버전의 경우 이들은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을 혼합적으로 던지면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려 한다.

아동에 대한 영향

- 이 제안이 아동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 이것이 특정 집단의 아동 각각에 다른 영향을 줄까
- 특별히 취약한 아동에 주는 영향은 무엇일까

정보와 상의(consultation)

- 당신은 아동과 상의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누구와 어떻게 상의 할 것인가
-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다른 획득가능한 정보처가 있는가

대안

-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아동(특히 취약 아동)에게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 이 제안의 부정적 측면은 경감될 수 있는가 아니면 긍정적 측면이 더해질 수 있는가

결론과 추천

- 아동 집단 간 혹은 아동과 여타 집단 간 이해관계의 경합이 발생하는가
- 증거가 주어진 상황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제안하겠는가
-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측정되거나 감시(모니터링)될 수 있는가

출처: Children&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셋째, 호주에서 아동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아동·청소년 커미셔너는 영향평가의 결과를 준거로 제안을 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Children&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 (a) 판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증거에 기초를 두어야 함(아동영향평가가 기초하고 있는 정보의 원천에 대해 설명할 것)
- (b) 평가과정에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함(ex.가용불가능한 정보, 시간의 부족)
- (c) 의견의 차이와 아동청소년에 주는 영향력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함
- (d) 만약 제안된 법·정책이 아동청소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하지만 그것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왜 아동청소년의 이익 이외의 것이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함

출처: Children&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5)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아동영향평가 사례 역시 좋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평가의 항목과 정보수집방법 그리고 실제 진행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평가의 항목에 있어서 뉴질랜드의 아동영향평가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UNICEF New Zealand⁴⁾).

- (a) 의사결정의 영향력: 적정 소득, 교육, 의료, 안전한 집,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지속적 양육 가정, 지지받을 수 있는 공동체와 놀이
- (b) 차등적 영향력: 아동을 성별, 연령, 종족, 장애, 한부모 등으로 세분화
- (c) 아동의 목소리: 정책이나 입법에 있어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가
- (d) 정책 할당이 완료되었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정적 영향력이 파악된다면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만약 부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시행해야 한다면 그것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하고,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해야 함

둘째, 뉴질랜드는 아동영향평가에 있어서 다음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한다(Mason and Hanna, 2009: 48).

- (a) 포커스 그룹 (b) 인구와 지역 분석(양적, 질적) (c) 시나리오 평가(양적, 질적)
- (d) 건강 위험 파악과 분류(양적, 질적) (e) 이해당사자 워크숍 (f) 서베이
- (g) 핵심 정보보유자 인터뷰 (h) 브레인스토밍
- (i) 시민을 초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평가를 하도록 함
- (j) 델파이 프로세스(반복프로세스를 사용한 웨이팅(weighting)과 스케일링을 결정할 때 전문가 패널과 주요 의사결정자를 참여시킴)
- (k) 환경 모니터링(양적, 질적) (l)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m) 비용편익 분석

셋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실제로 시행된 아동영향평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오클랜드의 사례는 통상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아동영향평가라기보다는 아동 현황조사나 실태조사에 가깝다. 하지만 이들은 이 조사도 아동영향평가라 규정하고 있으며, 매우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다. 뉴질랜드

4) www.msdc.govt.nz/uncroc

드의 오클랜드 시는 시에서 아동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를 시행했다. 이들은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통, 지역공동체, 사회정책 부서의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평가를 수행하고,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측정지표가 있는지, 아동을 어떻게 참여시킬지를 논의했고, 시는 지도와 통계자료, 아동보육 센터와 학교의 리스트 자료를 제공했다(Mason and Hanna, 2009: 19).

이들은 어떻게 아동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여 포커스 그룹, 크리스마스 파티, 등굣길 방문 등을 통해 대면인터뷰를 시행했고, 학교 휴일 프로그램과 공공 도서관을 사용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인터뷰는 인터뷰 훈련을 받은 16세 아동이 수행했고, 20개의 질문을 참여 아동에게 했다. 질문은 주로 아동의 집에 대한 인식과 경험, 관계(친족, 가족, 친구), 여가, 교통에 대한 내용이며 표본은 나이와 젠더, 종족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그리고 이들은 인터뷰에 참여한 아동에게 무료 동물원 입장권을 증정했는데, 인터뷰를 한 아동은 총 44명(해당 지역 아동의 7.3% 수준)이었다. 인터뷰 결과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었다(Mason and Hanna, 2009: 19-20).

- (a) 보다 많은 집에서의 공간(76%), 보다 많은 집 밖에서의 공간(43%)
- (b) 소음문제(60%): 몇몇 아동은 이 때문에 수면을 취하기 어려움
- (c) 반려동물이 없음(92%)
- (d) 이웃이 때때로만 친절하거나, 친절하지 않음(25%)
- (e) 휴일에 야외에서 놀지 못함(16%)
- (f) 한부모 가정(27%)
- (g) 다수의 아동이 가까이에서 일하는 부모가 있음(77%)

시는 조사 이후에 관련 기관들에 이 결과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평가에 대한 지식을 제도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지역기관의 업무 관련자들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고, 이를 통해 이들이 아동의 이슈와 시각을 알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아동의 의견을 듣고 이들과 논의한다는 것은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시각이 훨씬 더 포착하기가 용이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Mason and Hanna, 2009: 21).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 국제기구 및 단체, 그리고 몇몇 국가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새로운 아동영향평가 지표를 만드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아동영향평가는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단일한 아동영향평가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수행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호주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처럼 평가는 초기의 간단한 평가나 총괄평가로 구분할 수 있고, 아니면 시기를 기준으로 사전 영향평가와 사후영향평가로 나눌 수도 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영향평가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유니세프 캐나다의 지적처럼 이러한 평가는 빨리 이루어질수록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Whalen, 2012).

둘째, 평가에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고,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OECD, 웨일즈, 핀란드의 사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아동영향평가를 비롯한 영향평가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가도구의 활용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캐나다 뉴브런즈윅 사례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아동영향평가에는 아동청소년 단체 및 지방정부의 유관부처 공무원, 전문가들의 역량이 모두 필요한데(Whalen, Kotze, Pollack, 2014: 5), 이러한 논점은 웨일즈와 핀란드 등 여러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셋째,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해외의 사례들은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 혹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유니세프와 핀란드의 사례가 이를 특히나 강조하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서울시의 아동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을 혼합하여, 전자의 방법을 통해 빈곤가구와 같은 저소득 집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후자의 방법을 통해 보다 폭넓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실제 평가에 있어서는 시간과 예산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는데, 혼합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제약을 상당부분 극복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3장의 분석대상에는 직접적

으로 포함되지 않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비정부단체인 Child Helpline International에서 지적하는 것, 즉 영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영향력의 단계와 순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CHI, 2012: 12, 18).

넷째, 아동을 단일한 집단으로 상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논점은 스웨덴과 호주의 사례가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아동을 동일한 이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아동은 성별과 연령은 물론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정책이나 프로젝트에 상이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서울시의 아동영향평가 지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착안하는 동시에, 한국의 특수성 등을 고르게 반영해서 아동을 단일한 집단으로 여기지 않고 아동의 성별과 연령, 장애에 주목해야 하고, 아동이 시설이나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지, 미혼모나 탈북 성소수자 아동인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스웨덴과 핀란드의 사례는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있어 그것의 결과를 단일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두 나라의 사례는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단순히 영향이 있다, 없다 여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 영향이 있을 경우, 어떤 영향인지, 그것이 직접적인 것인지, 간접적인 것인지로 세분화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영향의 유무만을 따지는 기존 접근에 더하여 영향의 양과 질도 포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는 아동영향평가지표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여섯째, 평가의 주체와 평가결과의 처리에 대해서 해외 사례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대부분의 해외사례는 평가에 있어서 주체 혹은 기관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고, 기관이 가진 권한 역시 명료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아동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강제력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이와 연관지어서 중요한 것은 아동영향평가를 아동친화도시 구축이라는 맥락에서 아동친화예산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법적인 강제력과 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사례는 영향평가의 결과를 여러 방법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그리고 호주 사례는 평가의 한계와 평가에 대한 의견 차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IV

국내의 아동영향평가 분석 및 시사점

1. 국내의 영향평가 분석
2. 국내 아동영향평가 분석
3.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국내의 아동영향평가 분석 및 시사점

1. 국내의 영향평가 분석

4장에서는 앞서의 해외 사례 분석에 이어서 국내의 아동영향평가에 대해서 분석한다. 본격적인 국내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에 앞서 이 절에서는 먼저 국내에서 시행된 여타 영향평가들에 대해서 살펴보려한다¹⁾. 비록 대상은 상이할지언정, 이들은 모두 국내에서 시행된 영향평가들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아동영향평가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살펴볼 국내의 영향평가는 고용, 환경, 건강, 교육 환경, 성별인데, 이들은 ■표 IV-1■에 제시된 것처럼 개별법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고용영향평가는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실시되었는데, 국가 및 자치 단체의 주요 사업, 정책, 법, 그리고 제도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 작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추구하며, 사업수행자가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검토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실시되는 건강영향평가는 환경보건법을 근거로 하며 2010년부터 시행중이다. 건강영향평가는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

1) [부록1]에 요약 제시

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개별사업자가 하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검토한다.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1999년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교육환경평가의 경우, 학생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가 평가하고 교육감이 검토한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밝힘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표 IV-1 | 영향평가의 종류 및 내용

	성별영향 분석평가	고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평가 주체	공무원·전문가	한국노동 연구원	개별사업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검토)	사업수행자 (결과를 환경부장관 검토)	사업수행자 (교육감 검토)
목적	실질적 성평등 실현	고용친화적인 정책추진과 예산 작성 지원	보전과 개발의 조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 최소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 사전 차단
평가 대상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계획, 주요정책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세출예산 사업	중앙부처 및 지자체 또는 고용정책 심의회가 선정한 사업	환경 관련 17개 사업 ²⁾ 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건설사업으로 국한(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사업, 에너지 개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도시관리계획의 학교용지로 결정하기 위한 용지,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근거 법령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2011년 제정)	고용정책 기본법 (2009년 개정)	환경영향 평가법 (2000년 제정)	환경보건법 13조 (2009년 제정)	학교보건법 (2007년 개정)
시작 시점	2005년	2010년	1977년	2010년	1999년
주무 부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환경부	교육부

그런데 영향평가들에는 각기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기존 영향평가들의 장단점에 대한 고찰은 서울시 아동영향평가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고용, 환경, 건강, 교육환경 부문의 장단점을 간략히 제시한 후, 아동영향평가에 가장 핵심적인 논점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 그것의 함의를 제시하려 한다.

먼저,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지닌다. 고용영향평가는 대상도 목적도 매우 뚜렷하며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지표들로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일반화가 가능하고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물론 그 범위와 대상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단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나 최근 이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6).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함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으나 결과는 불확실하며 객관성 담보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 문제이다. 그러나 기술적인 성격이 강한 환경영향평가는 아동의 주거지나 공간 환경에 대한 내용 등 아동영향평가의 일부분에만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영향평가의 경우 특정 질병에 국한되거나 주관성이 강한 부분이 있다는 단점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환경영향평가에 어느 정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으며 아동의 건강 분야 등에 국한해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육환경평가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주변이라는 특수한 대상이 존재하며 환경평가와 일면 유사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도 객관성 담보와 평가 주체들의 긴밀한 연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 2) 1.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 건설사업, 5. 도로 건설사업, 6. 수자원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포함) 건설사업, 8. 공항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11. 관광단지 개발사업, 12. 산지 개발사업, 13. 특정지역 개발사업, 14. 체육시설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표 IV-2 | 영향평가의 장단점

고용영향평가	
장점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 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게 할 수 있음
단점	(1) 고용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음: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평가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실제로 정부부처나 지자체가 요청하거나 협의한 사업위주로 대상이 선정되고, 사업규모가 크거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2)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지 않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선정하는 평가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사업’. 따라서 사전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 및 국회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 (3) 고용영향평가 결과의 활용과 사후관리 장치가 미흡: 법령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결과를 정부부처나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 장은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만 존재. 따라서 평가결과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어려움 (4)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 등 인프라가 취약 (5) 일부 지자체 별로 자체적으로 고용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한 방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명확한 법적 추진근거가 미약하고 전문적인 평가체제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지원 및 연계시스템과 갖추고 있지 않음
환경영향평가	
장점	현재까지 가장 이상적인 예방적 환경정책수단
단점	(1) 정보의 부족과 환경문제의 불확실성: 제한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불확실 (2) 환경가치의 객관화, 계량화가 어려움: 일반적으로 환경가치는 계량하기 어려우며, 환경평가과정에서의 결정도 주관적 추리, 경험과 전문지식에 의한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자주 발생 (3) 대상사업의 한정성: 모든 인간 활동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4) 개발과 보전의 적절한 판단기준 부재: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대부분의 개발행위는 피해자와 수혜자가 발생하고, 가치판단이 첨예하게 대립해 이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또한 자연환경이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수한 자연경관과 생물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도 불확실함
건강영향평가(WHO)	
장점	대상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기여

단점	(1) 건강영향평가를 기획하고, 수행하고, 결과를 평가할 인력의 부족.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함 (2)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해: 일반인은 물론 정책입안자나 결정자들도 이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음 (3) 인식의 부족은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부족으로 연결: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킨 후 점진적으로 자원을 확보해서 단기 프로그램부터 실행한 후 이후 장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을 택할 것 (4) 모든 이들이 동의하는 건강영향평가 도구나 방법은 없음 (5) 정치적 지지의 부족 (6) 시간의 부족: 건강영향평가 시행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
교육환경평가	
장점	교육환경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됨. 교육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
단점	(1) 인식의 부족: 학교용지 선정자 및 학교환경 관리자, 수요자 등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함 (2)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교육환경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전문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됨. 평가서를 작성하는 시행자, 평가서를 검토하는 공무원, 교육환경평가를 심의하는 학교보건위원회의 전문성과 평가운영의 객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3) 평가의 문제: 교육환경평가 교육청 및 정부부처 담당자와 평가 작성기관은 평가가 단편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를 종합화해야하고, 자료수집 및 작성을 간소화해야 하며,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선택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출처: 손을춘, 2013; 한국교육개발원, 2009; 환경부, 2016 내용 일부 발췌, 재구성 및 분석

이제 아동영향평가에 보다 직접적인 함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표 IV-3■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문화, 경제, 생물학적 성별 차이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평가한다. 이를 위해 성별에 따라 요구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분석해 내고 이러한 차이가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예산 배분과 사업 수혜 비율 등의 내용으로 평가하게 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러한 특징은 아동영향평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선 해외사례 분석에서 지적한 것처럼 아동은 단일한 집단이 아닌 다양한 특성을 지니는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3■에 제시한 것처럼 아동은 성별이외에도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라 각기 상이한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계층 간 격차가 아동정책수행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형평성을 또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학교라는 제도권에 속하지 못한 학교 밖 아동도 정책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아동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역시 정책에서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영향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제시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생물학적 차이 반영을 확장해서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형평성 역시 영향평가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정책이 사회구성원들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평가하고, 그것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집단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아동영향평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여타 영향평가와 달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 대상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교육환경 평가처럼 평가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내용상으로도 기술적인 결함이나 가시적인 측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불평등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인 영향들을 평가한다. 이로 인해 복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평가 항목들도 참고할만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부분에서 성별 요구도와 형평성을 고려하는데 이와 유사하게 아동영향평가에서 아동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고려할 수 있다. 단 아동영향평가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상호 비교 대상이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달리 분명한 비교대상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외사례들을 참고하며 언급했던 것처럼 평가대상과 분야에 따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세부요소들까지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모두 필요하다.

표 IV-3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용

분석평가 항목(대)	분석평가 항목(중)	분석평가 항목(소)
개요	사업 목적, 추진 근거, 주요 사업 내용, 예산 현황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1. 성별 요구도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2. 성별 형평성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3. 법령(지침)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4. 예산	예산 반영 계획
	5. 사업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분석평가 항목(대)	분석평가 항목(중)	분석평가 항목(소)
개요	사업 목적, 추진 근거, 주요 사업 내용, 예산 현황	
아동친화적인 정책환경	1. 아동연령별 요구도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 집단 내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요구 차이
	2. 아동 내의 형평성	사업수혜에서의 다양한 아동 요구 반영 예산배분에서의 다양한 아동 요구 반영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3. 법령(지침)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4. 예산	예산 반영 계획
	5. 사업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타의 영향평가들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16: 331~333), 이는 아동영향평가를 설계하는데 있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첫째, 평가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전국적 확산과 일반적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하는 대상과 평가 주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특정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정책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는다. 이는 아동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확산과 일반화의 문제는 아동영향평가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담당자인 분석평가책임관의 책무성 및 권한 인지도가 낮고 불명확하며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 그런데 아동영향평가 역시 정성적 분석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이와 유사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성별보다 더욱 다양한 대상과 현상을 분석해야 할 수도 있는 아동영향평가에서 평가 담당자 권한이 불분명하면 원활한 평가가 진행되기 힘들고 평가의 질 담보도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많은 대상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니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사업 담당자들에 의해 내용이 좌우되기도 한다. 중장기 계획이나 조례, 법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담보하기 용이해지고 하위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영향력도 발생한다. 또한, 세부사업 담당자가 평가하는 현재의 평가주체가 관리자 이상의 평가 주체로 그 성격이 바뀔 수 있고 이는 다른 정책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더 높인다.

2. 국내 아동영향평가 분석

1) 국내 아동영향평가 현황

2016년 3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2019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는 아동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아동영향평가를 정식 사전, 사후에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성북구, 강동구 정도이다(2017년 상반기 기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실제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는지 보다는 아동영향평가 절차체계를 구축했는지 여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아동영향평가는 아직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각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통해 시범적으로, 사전적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2016년 5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만, 아동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도 2016년 9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이들도 아동영향평가 자문단을 2017년 4월에 구성, 같은 해에 아동영향진단을 시행했으며, 군산시도 2016년 11월 인증을 받은 후 2017년에는 각 부서별로 대상사업 28개를 선정, 시범적인 아동영향평가 시행을 이야기했다. 여타 아동친화도시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 도봉구도 2016년 11월 선정 후, 2017년에는 유니세프와 협력해 아동영향평가를 시범 운영하는 단계에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도 아직 본격적인 사전, 사후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 강동구³⁾는 2016년 132개 사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실시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5월과 7월에

3) 강동구의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제·개정 조례 규칙, 중장기 사업계획, 아동대상 단위 사업계획 등인데, 평가는 사전, 사후로 나누며 필요시 심층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심층영향평가에는 이해당사자인 아동이 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고방안이 포함된다. 평가방법은 담당부서에서 아동영향평가 점검표와 기초자료를 제출하면 평가부서에서 검토의견서를 전달, 그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아동권리 침해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아동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가서를 재구성하여 아동,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심층영향평가 과정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한다.

각각 인증을 받은 오산시와 전주시는 아동영향평가의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의 아동영향평가는 지자체 별로 사실상 내용에 있어서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고, 선발주자인 서울 성북구에서 시행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 국내의 한 연구는 기존의 영향평가가 성북구의 방식과 유니세프 평가지의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박금식 외, 2017), 사실이 둘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로드맵에서 가장 강조되는 그리고 토대가 되는 항목인 참여와 존중의 경우 현재까지의 아동영향평가에서 특별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참여권을 보장했느냐’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9.3.23.] [본조신설 2016.3.22.]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의 아동영향평가는 크게 세 가지 대상을 기준으로 실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해당 연도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사업 둘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셋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집하는 (3년 이상)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아래의 표는 몇몇 지역의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 IV-4 아동영향평가 대상

서울시 성북구
- 세출예산사업 중 아동관련 사업 - 아동관련 조례 제·개정 ex) 2015년 세출예산 사업 중 아동관련 42개 사업과 제·개정 조례 13건 중 아동관련 조례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실시
서울시 강동구
- 아동대상 단위 사업계획 - 제·개정 조례 규칙 - 중장기 사업계획
서울시 송파구
- 아동 관련 정책, 조례, 사업, 예산을 평가 대상으로 함
서울시 종로구
- 해당 연도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사업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집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군산시
- 아동대상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 법률에 의거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부산시
- 시범 아동영향평가 대상: 부산시 아동정책 소관부서(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팀)와 연구진이 부산시 2017년 예산서를 바탕으로 아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함 -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2017년 부산시 예산의 세부사업에서 사업대상에 아동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222개를 대상으로 실시(박금식 외, 2017. 61-68)

국내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 선정을 위해, 그것의 필수항목인 아동친화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책자를 발간한다. 이것의 형식과 논리는 모두 동일하며 대상에 대해서도 아동 관련이라는 것 외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 다만 인천 서구의 경우 아동 관련이라고만 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동, 산모, 부모와 법정후견인(또는 아동에게 법적 책임 있는 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IV-5 아동친화예산 대상의 예

서울시 성북구
- 성북구의 아동친화예산은 아동영향평가와 연계. 아동친화예산서 상에 아동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기재. 아동친화예산의 대상은 해당 년 세출예산서(일반회계) 상의 아동관련 ‘세부사업’. ex)성북구 아동친화예산은 2015년 기준 전체 예산의 25.72%이나 2012년부터 매년 조금씩 증가. 2013년 26.58%, 2014년 27.82%(성북구, 2016: 16) - 예산 사용용도의 성격을 분석하여 생존·보호·발달·참여권으로 분류해서 제시
서울시 송파구
- 송파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2016년 세출예산서 상의 아동 관련 예산을 분석 ex) 2016년 사업수: 19개 부서, 104개 사업. 아동 관련 사업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총예산 대비 15%. ‘송파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은 아동 관련 예산을 아동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이에 따라 분류. 예를 들어 전체 예산 중 발달 권은 얼마, 보호권은 얼마, 생존권은 얼마, 참여권은 얼마라는 것
인천시 서구
- 인천 서구는 2016년 아동친화예산서를 발간. 이들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아동, 산모, 부모와 법정후견인(또는 아동에게 법적 책임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제시. ex)2016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8.6% - 이를 유니세프 아동친화영역별 아동권리 관점에서 재원배분을 평가하고 분석한다는 것.
부산시
- 아동친화예산서 발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것은 해당년도 아동영향평가 대상인 세출예산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예산규모, 수혜자, 사업내용, 연도별 예산 변동 추이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 관련 사업 예산의 사용, 배분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박금식, 외, 2017: 95)

2) 서울 성북구

국내에서 아동영향평가를 선도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서울 성북구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북구의 아동영향평가 추진부서는 교육아동 청소년 담당관이며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조부서는 없는 상황이다. 해당 부서는 지표체계를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아동 청소년 참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돌봄체계와 혁신교육도시 프로젝트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2014년 성북구 예산 중 아동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25.72%인데, 이들은 아동 관련 사업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의 권리실현에 기여하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려 했다. 성북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00만원의 예산을 할당해서 첫 해부터 각각 50건, 60건, 70건의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려 했다. 성북구는 이를 위해서 전문가 지원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이 체계는 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에 필요한 심의와 자문 기능도 수행한다. 성북구의 기본 평가기준과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해당사업이 다음의 법규나 조례와 갈등우려가 있는가
 - (a) 유엔 아동권리협약
 - (b) 어린이, 아동, 청소년 법규
 - (c) 기 타 법규 및 타조례
- (2) 해당사업이 다음의 아동권리를 고려하고 있는가
 - (a) 생존권(식품, 깨끗한 환경과 안락한 주거, 적절 생활수준, 의료혜택)
 - (b) 보호권(차별, 착취, 학대와 방임, 분리, 형법으로부터 보호)
 - (c) 발달권(교육과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 (d) 참여권
- (3) 해당사업은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 (4) 해당사업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 (5) 해당사업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 (6) 해당사업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는가
- (7) 해당사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있는가
- (8) 해당사업과 관련된 심층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가
- (9) 해당사업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가(성북구에는 부재)
- (10) 필요한 지원 사항과 보완계획

성북구는 2016년 사전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대상 사업은 총 118개 사업이었고, 이 평가는 성북구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도시안전과, 마을민주주의과,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등에서 시행했다. 총 118개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28건(약 23%),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72건(약 61%)을 기록했다. 사업 중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것은 118개 중 96건(약 81%)이었다. 아동권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네 개의 아동권리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고려한 사업의 숫자는 다음과 같다: (a)생존권 73건(약 61%) (b)보호권 69건 (약 58%) (c)발달권 84건(약 71%) (d)참여권 61건 (약 51%). 홍보의 경우 아동에게 홍보가 이루어진 경우는 28건(약 23%), 이해관계자는 72건(약 61%)을 기록했다. 타법규나 조례와의 갈등이 우려되는 건은 한 건이었는데, 이것은 건강정책과에서 시행한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이었으며 이 사업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결과가 있었다.

성북구의 118개 사업 중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나타난 것은 총 23건(약 19%)이었으며 사후평가의 방식으로 제시된 것은 전문가 외부평가, 부서자체사후평가, 아동대상평가조사, 아동참여기구검토 등이었다.

3) 서울 송파구

서울 송파구에서도 2015년 말부터 2016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를 시행했다. 하지만 설문내용은 성북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설문내용은 4대 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 및 차별과 무차별, 접근성, 정보와 자원연계, 기존서비스 개선 제안이라는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평가는 송파구 아동 청소년 영향평가 사전점검표, 영향 검토 의견서, 소관부서 자체 아동 청소년 영향 사후점검표, 영향 검토 의견서(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144-153)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 영향평가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방식	주요 내용
사전 평가	소관부서자체평가	아동·청소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이나 조례·규칙에 대해 각 사업, 조례나 규칙별 책임부서에서 「아동·청소년영향평가 사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에게 전달함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부서의 검토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는 「아동·청소년영향평가사전 점검표」를 검토 후 「아동·청소년영향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 등에 전달함
	심층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가 심사 및 평가 의견을 원 기 판단하기에 아동·청소년의 의 확부서에 전달하도록 함.

구분	방식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의 검토	사가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 조례나 규칙의 경우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아동·청소년참여기구'의 검토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확인함	다만 심사기일이 늦어질 경우에는 기존의 기획대로 실시하고 추후 사업, 조례나 규칙에 반영하도록 조정함
	송파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층 심의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가 판단하기에 사안이 중대하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송파구 아동·청소년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권리유형별 해당사업 빈도와 비율(104개사업-중복응답)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해당사업수	203	40	45	85	33
관련사업비율		38%	43%	82%	32%
총 목표실적	18,651,082	1,142,964	3,296,375	9,168,222	5,043,521
총 아동·청소년 목표실적	11,238,600	456,114	1,570,475	5,650,167	3,561,844
예산총액(단가)	156,480,294 (8.4)	44,383,038 (38.8)	27,920,624 (8.5)	64,219,956 (7.0)	19,956,676 (4.0)
아동·청소년관련 예산총액(단가)	97,812,375 (8.7)	18,673,154 (40.9)	16,853,243 (10.7)	49,925,240 (8.8)	12,360,738 (3.5)

- 권리유형 : 발달권 82%, 보호권 43%, 생존권 38%, 참여권 32%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총액 : 87,122,218천원(15%차지)

* 2016년도 총 예산이 577,004,763천원

* 권리별 예산반영 : 생존권 > 보호권 > 발달권 > 참여권

출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18-21

송파구에서 실시한 송파구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조례, 사업, 예산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의 결과는 위의 표와 같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18-21). 평가대상이 된 사업은 총 104개이며, 아동·청소년 차별여부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진행했다는 응답이 93.9%이고,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에 대해서는 86%가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사업 계획 및 운영 시 관련자 의견 수렴은 43.7%가 그랬다고 답했는데, 이들은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보호자,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부분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고려한 사업 홍보는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한 사업 이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사업 홍보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학교, SNS 등을 통해 친숙하고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사업홍보를 장려하기 위한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⁴⁾.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대상의 정책범위

-조례·규칙: 연간 9건 내외, 단위사업: 100건 내외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절차 (사전 영향평가와 사후 영향평가로 구분)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초 서식과 절차 개발
 - 사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는 소관부서 자체평가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부서의 검토
 -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심의 및 자문으로 구성
- 사전 영향평가의 절차: 업무소관 부서(아동·청소년영향평가 사전 점검표 제출)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부서가 검토(아동·청소년영향 검토의견서) → 업무 소관부서에서 사업시행
- 사후 영향평가: 부서 자체 사후평가 →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검토 → 아동·청소년참여기구의 사후검토 → 외부전문가의 자문

4) 권리별 의견수렴 및 홍보대상 검토

(a)계획시 관련자 의견수렴: 참여권>보호권>발달권>생존권

(b)운영시 의견수렴: 참여권>보호권>생존권>발달권

(c)홍보 과정에서 대상자의 특성고려: 참여권>발달권>생존권>보호권

사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의 필요성: 21.6%

사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가 필요한 권리유형: 참여권>발달권>보호권>생존권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실태와 욕구파악을 위해 현장 전문가(시설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 실시
 - 4대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및 차별과 무차별, 접근성, 정보와 자원연계, 기존서비스 개선 제안의 범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접근성 촉진방안, 청소년 참여 보장을 위한 공무사업 지원 등을 제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시범적용

- 송파구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104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각 사업부서별로 작성한 사전 영향평가서를 수집, 분석하였음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권리유형 및 사업 특성, 아동·청소년 차별여부
 -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 사업 운영시 의견수렴 노력 등
 - 아동·청소년을 고려한 사업 홍보
 - 권리별 의견수렴 및 홍보대상 검토 및 사후 평가의 필요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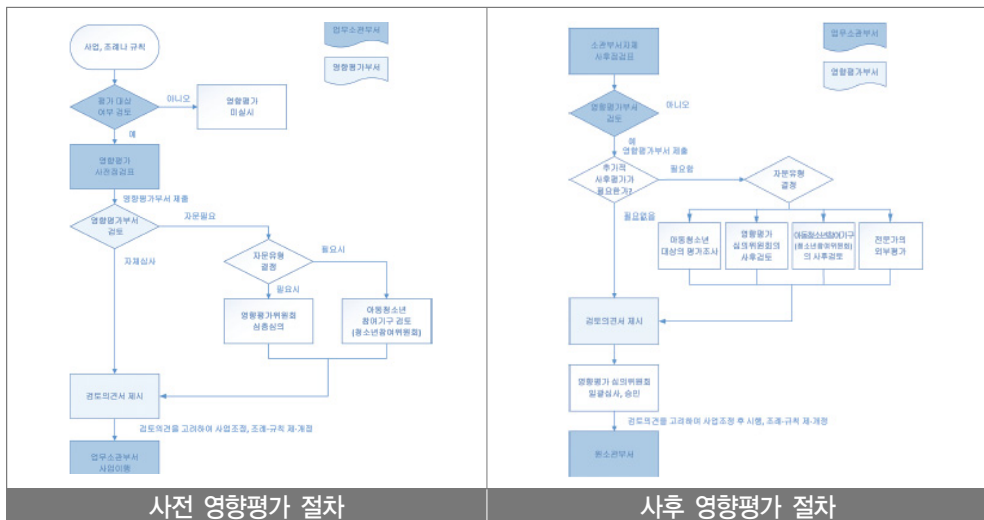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및 아동친화도시의 시행을 위한 제언

-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을 위한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사후 영향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아동·청소년의 의견반영 기제 마련
 -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의 내실화
 -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의 아동·청소년 참여기제 필요
 - 지역 내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시사점

-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추진을 위한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
 - 사후 영향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아동·청소년의 의견반영 기제 마련
 -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의 내실화
 -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의 아동·청소년 참여기제 필요
 - 지역 내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구분	방식	주요 내용
사후 평가	소관부서자체 사후평가	아동·청소년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각 사업별 책임부서에서 「소관부서자체 아동·청소년영향 사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에 전달함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평가 조사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가 사전 검토시 해당 사업진행시 대상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조사, FGI 등이 필요할 경우에 이를 요구하고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조사결과를 소관부서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영향평가 부서의 검토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는 「소관부서자체 아동·청소년영향 사후평가 점검표」를 검토 후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사안에 따라 해당부서 등에 권고함
	심층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의 검토 「송파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가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고, 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일 경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사업별 아동·청소년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영향평가부서가 판단하기에 사안이 중대하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층 심의를 실시함. 심층 심의 결과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심사, 모니터링, 평가 의견을 소관부서 자체평가에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



출처: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140-143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의 각종 영향평가와 아동영향평가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새로운 아동영향평가 지표를 만드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 누가 영향평가를 수행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혼란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고 이는 영향평가의 수행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여타 영향평가의 사례들은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우리는 해외사례를 비롯한 여러 경우를 통해 아동영향평가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는데, 국내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논점을 포착할 수 있다.

둘째, 아동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평가는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국내에서 수행되는 여러 영향평가들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이와 연관지어서 우리는 국내사례들을 통해 아동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 삶 전반에 줄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해서 평가 대상을 아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대해 검토해봐야 하는 것이다.

셋째, 평가방법에 있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혼합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3장의 해외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과 동일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 방법 하나만 사용했을 때, 우리는 적지 않은 문제와 대면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환경이나 건강, 교육환경평가와 같은 국내의 여러 사례들은 평가의 주관성이나 기준미비에 따른 문제점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성평가만으로 아동영향평가가 수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서울시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합해서 수행해야 한다.

넷째, 평가의 인지도를 높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잘 활용하고 사후관리에 힘써야 한다. 성별영향평가의 사례는 평가의 인지도가 낮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경고하고 있다. 아무리 체계적이고 잘 구성된 평가라도 인지도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그것은 확산되고 일반화될 수 없다. 아울러 3장 해외사례를 논하면서 지적한 것처럼 평가결과는 공유되어야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일정한 강제성도 부과되어야 한다. 평가가 잘 수행되어서 일정한 결과나 나왔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으려면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V

아동영향평가 추진체계와 지표(안)

1. 아동영향평가 추진체계(안)
2.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안)
3. 아동영향평가 질적 지표 결과 제시 방법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아동영향평가 추진체계와 지표(안)

1. 아동영향평가 추진체계(안)

이 장에서는 아동영향평가의 수행 방식과 서울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한다.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먼저 평가대상, 주체, 방법에 대한 실행체계(안)을 제시하고 이어서 지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논의하고 설정해야 하는 것이 아동영향평가 대상 범위이다. 아동영향평가의 과정은 유연할 수 있는데 복잡한 대규모 사업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평가의 계획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Children and 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따라서 평가 대상의 단위와 분야를 우선 선정하고 이에 따라 아동영향평가의 방향과 지표가 설정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 조례, 장기 계획, 인허가 사업 등이다(박영균 외, 2014: 157).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다음에 제시된 네 가지 항목을 평가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실행에서는 그 중에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 ① 지자체 장이 추진하는 아동 관련 법률, 조례⁵⁾, 규칙의 제·개정 내용에 적용
- ②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계획에 검토되어야 함(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는 조치와 아동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해당계획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적용
- ④ 지자체장이 인허가하는 민간사업 중에서 아동에게 명백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와 지자체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에 적용

출처: 박영균 외, 2014: 157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아동영향평가는 대부분 비(非)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즉, 많은 경우 아동 관련 부서의 정책이나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정책,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한 사업 등이다.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거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 전반에 걸친 아동의 권리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러한 경우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을 위한 정책 실행을 피드백 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몇몇 지자체 중⁶⁾ 가장 먼저 사전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한 성북구의 사례를 살펴보자. 성북구의 경우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 조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5)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2017.01.05 제정),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2016.03.24 제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3.10.04 제정),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3.10.04 제정),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2011.07.28. 제정) 등

6)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 강동구 등. 강동구는 2017년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과 「강동구 고덕천 에너지마루 운영 조례」 등 총 2건의 조례안부터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2016년에는 아동친화도시추진단 주요업무(4개년 기본계획) 대상 132개 사업에 대해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있음

성북구의 아동영향평가 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에 관한 조례」(2014.05.29. 공포)

-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관련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중장기 사업 계획
-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아동을 대상으로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등

그런데 우리는 아동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관점 즉 복지적 시각과 권리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먼저 복지적 시각으로 볼 경우 고려 대상 정책의 범위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서울시 예산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 복지사업은 총 501개로, 7조9천784억 원이 투입됐다. 서울시의 501개 복지사업 가운데 청장년층 대상 사업은 272개로 54.3%를 차지했으며, 아동·청소년 95개(19%), 노인 87개(17.3%), 아동 47개(9.4%)이다. 예산규모의 경우, 청장년 대상이 2조9천855억 원(37.4%), 노인 2조6천291억 원(33%), 아동 1조6천12억 원(20.1%) 이었고, 아동·청소년은 7천626억 원(9.5%)로 최하위이다. 생애주기별 예산 투입은 아동의 경우 돌봄교육(90.25%), 아동·청소년은 일상생활지원(44.39%), 청장년은 주거(34.97%), 노인은 일상생활지원(64.7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시도별 1인당 아동청소년 복지비 수준이 서울시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김미숙 외, 2012).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 반영사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와 같이 복지적인 시각에서 아동영향평가를 할 경우에도 전체적인 아동 복지사업이 다른 분야의 사업에 비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모니터링 할 필요성은 있다. 하지만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 정책 전반으로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좁은 범위의 평가대상 설정에서 더 나아가 아동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권리적 시각에서 아동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할 경우 서울시 아동친화도시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참여, 존중, 건강, 역량, 여가, 안전, 보호, 돌봄)에 해당하는 정책들

을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아동 직접대상사업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다. 따라서 아동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현재보다 넓힐 필요가 있고, 대상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의 내용과 강조점을 구분해야 한다. 아동 직접대상사업의 경우 아동 집단 내의 형평성과 참여를 강조하고 아동대상사업이 아닌 경우 아동 권리 보장과 존중을 더 강조해야 한다.

아동영향평가를 할 때 세부사업 뿐만 아니라 조례, 계획과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평가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의 평가 대상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영향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단위)에서의 아동영향평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평가의 영향력 강화 측면에서도 적절하며 아동영향평가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다음의 표에 대상 구분에 대한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평가대상은 분야별로 건강, 안전, 여가, 역량, 보호, 돌봄 정책으로 나누어지고 아동에 대한 직접적 대상과 간접적 대상도 나뉜다. 그리고 각 부분에 해당되는 조례, 계획 그리고 사업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 이때 참여와 존중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선정 전반에 걸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 V-1 아동영향평가 대상 분류 예시

평가 대상		법·조례	계획	사업 (단위·세부)
건강	아동청소년 간접 대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보수계획 ▶도로교통소음 기준 수립계획 ▶아리수 음수대 전수조사 계획 ▶공공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점검계획	▶환경성 질환 영향 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사업
	아동청소년 직접 대상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식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어린이병원 규정집 정비계획 ▶2017년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계획 ▶2017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아동,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계획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소아전용응급실 지원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 ▶서울시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
안전	아동청소년 간접 대상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자전거길 안전표지 도색 추가 계획 ▶2017년 도로순찰 계획 ▶2017년 맨홀관리계획 ▶하천의 안정성 확보 및 기능유지를 위한 2017년 홍수기전 하천점검 계획	▶시설기능보강사업(2017) ▶도로별 등급관리제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공원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2017-06-02 ~ 2017-10-30) ▶자전거도로 안전난간 설치(주민참여사업)(2017. 11)
	아동청소년 직접 대상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2017년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사업 세부계획 ▶2017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 ▶어린이집 소방안전점검 계획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확대 설치 계획	▶2017년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사업 ▶2017년 서울시 아동안전체험교실 사업 ▶서울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사업 ▶201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사업
여가	아동청소년 간접 대상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시민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년도 서울광장 분수대 운영관리 계획 ▶서울역사박물관 홍보 종합계획 ▶「한강공원」, 앱 정비 계획 ▶「2017 서울세계불꽃축제」지원계획	▶걷기 마일리지 사업(2017.04) ▶2017년 서울시민카드 사업 ▶전통문화 계승지원(주민참여) 사업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아동청소년 직접 대상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2017 어린이 골프교실 운영계획 ▶2017 어린이놀이터 관리 계획 ▶미술관 견학 추진계획 ▶서울어린이대공원 지도 현행화 추진계획	▶학교 스포츠 클럽 ▶유·청소년 축구 운영 ▶17년 청소년어울림 마당·동아리활동 지원사업 ▶2017 서울시 창의어린이놀이터
역량	아동청소년 간접 대상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고령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세계 차 없는날(9월22일) 참여계획 ▶2018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참여계획 ▶시민참여 정원만들기 추진계획(난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 운영계획	▶문화민관해설사 육성 사업(2014~2016) ▶50+보람일자리 사업 ▶뉴딜일자리사업 ▶수목원코디테이터사업

평가 대상		법·조례	계획	사업 (단위·세부)
	아동청소년 직접 대상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년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계획 ▶공공도서관 시민 대토론회 -독서분야- 운영 계획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 ▶「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읽기」운영 계획	▶독서학습지도 멘토링 운영 사업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2017 자기주도력 향상을 위한 학습관 운영 ▶2017 서울형자유학기제
	아동청소년 간접 대상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계획 ▶찾동 복지교실 운영 계획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계획 ▶주거 위기가구 특별지원 계획	▶서울가꿈주택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서울특별시 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보호	아동청소년 직접 대상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임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17년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계획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개선 계획 ▶보호아동 현장체험학습 실시계획 ▶시립청소년특화시설 확충계획(2017.05)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사업 ▶가정임양 지원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운영 사업
	아동청소년 간접 대상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년도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계획 ▶돌봄서비스업 운영 실태점검 및 개선계획 ▶2017년 거점복지관 운영계획 ▶서울시 복지정책시민참여위원회조사계획 ▶서울형 가족정책 중장기계획 ▶서울시 보육 중장기 종합계획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지역사회재활중심사업 ▶2017년 주거복지센터 공공근로사업 ▶사랑의 PC보급사업
돌봄	아동청소년 직접 대상	▶서울특별시 아동지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자기주도력 향상을 위한 학습관 운영 계획 ▶2017년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2017년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7년 공동육아사업 컨설팅 계획	▶서울동행(동행행복)프로젝트 ▶독서학습지도 멘토링 ▶2017 서울까치서당 ▶2017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참여	준중	

2) 아동영향평가의 주체와 당사자 참여

(1) 평가 주체

아동영향평가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행 주관부서를 명료하게 정해야 한다. 영향평가의 대상이 중첩되기 때문에 시행주관부서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관련 업무 전담 조직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며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이다. 기존 조직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할 경우, 영향평가 담당조직의 중요한 기능인 타 기관에 대한 자문 제공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존 기능과의 중복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담 조직 주관으로 시행하되 정책이나 조례, 해당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아동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이를 시행하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한편 별도의 전문기관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영향평가는 보육, 교육, 복지, 주거, 가족, 고용, 건강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평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가 그룹이 주축이 되는 기관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서영미, 2016: 10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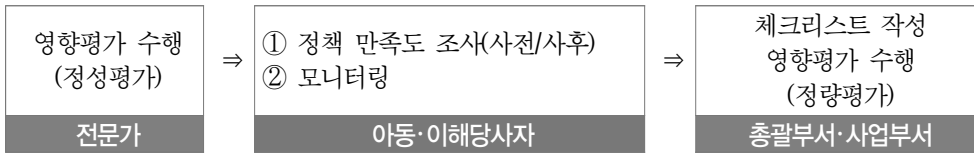
이때 민관협력 틀 구축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 전문가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및 평가는 아동영향평가의 질적인 결과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영향평가는 아동 인권뿐만 아니라 이익과 효율,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의 증진이라는 포괄적인 목적을 가진다. 전문가 평가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아동영향평가의 포괄적 속성과 평가의 독립성을 충족시키기에는 상당수 관료들의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료 주도 평가를 지지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과 아동권리 옴부즈맨을 포함하여 평가를 전담할 별도의 상설기구를 중심으로 그 안에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주장한다(서영미, 2016: 104-105). 결국 전문가 평가와 민관협력의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 집단의 참여는 아동영향평가의 성공 요소 중 하나이다(Mason and Hanna, 2009: 10).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02; Corrigan, 2006: 60-61)에서도 아동영향평가를 포함한 영향평가의 주요 논점들을 제

시하고, 전문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OECD의 지속가능성 영향평가(OECD, 2010)에 따르면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분야의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가도구들을 사용해야 하고, 그를 위해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캐나다 뉴브런즈윅은 다학제간, 다부처간 공동 작업을 통해 아동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아동청소년 단체 및 지방정부의 유관부처 공무원들이 모여 작업한다. 또한, 유니세프 캐나다와 지역 대학 교수들로부터 조언과 기술적 전문 지원을 받고 있다(Whalen, Kotze, Pollack, 2014: 5). 웨일즈에서도 국가수준과 지역수준에서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는데 국가수준에서는 아동관리부처와 유관 부처, 그리고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수준에서는 지역 자치단체의 관련 부서가 핵심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핀란드는 아동영향평가 시 전문가 2인 이상의 평가를 권장하는데, 평가자는 분석모델을 숙지한 아동관련 전문가로 제한하고 있다. 참여 가능 전문가로 사회보장기관, 아동보호기관, 가족지원서비스기관, 보육과 건강센터 기관 관련자, 심리학자 등(박영균 외, 2014: 73)을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평가에 있어서 담당부처를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협업을 도모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화를 해 나아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아동영향평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2) 당사자 참여

관료 집단, 전문가 집단과 함께 중요한 집단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아동이며 내실있는 아동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이들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아동영향평가에 있어 아동의 참여는 중심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기존 아동참여기구 및 위원회를 활용하고, 평가 프로세스에 아동들의 의견을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해야 한다. 아동당사자와 관련 이해당사자의 정책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이는 아동을 존중하는 것인 동시에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영향평가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정책만족도 조사의 시행에 있어서 엠보팅과 같은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적은 예산을 통해 보다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만족도 설문에 대한 응답은 폐쇄형 리커트 척도를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 그림 V-1 ■ 평가 방법

주요정책만족도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 표 V-2 ■ 와 같이 정리 가능하다 (박중훈, 2010: 50). 대부분의 정책만족도 조사는 아래의 ■ 표 V-2 ■ 에 제시된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아동영향평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표 V-2 ■ 아동 및 이해당사자 만족도 조사 설문 예시

질문 예시	측정 항목 성격
아동과 이해당사자와 소통, 의견 교환이 잘 된다고 생각하나요	민주성 항목
아동과 이해당사자 의견이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민주성 항목
아동의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민주성 또는 적정성 항목

민주성(정책형성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등 민주성)은 해당 정책에 대해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이고 적정성은 정책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내용의 적정성을 말한다. 즉 위 정책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한다. 대응성(정책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은 해당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상황변화와 문제점을 대처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이며 효과성(정책의 효과성)은 해당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유·무형의 성과를 실제로 거두었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이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① 만족도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대한 설명문 예시 ② 응답자(일반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③ 정책활동을 구성하는 세부활동 요소에 대한 만족도 ④ 조사대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 만족도(해당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 ⑤ 기타 제안사항(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보완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이다.

표 V-3 정량평가, 정성평가, 만족도 조사 수행 주체

	대상	수행	검토
정량 평가	선정된 일부 사업	사업부서	총괄부서
정성 평가		전문가	전문위원회·아동·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		아동·이해당사자	전문가·총괄부서

영향평가 및 만족도 조사는 일부 선정된 사업에 한하며 사업선정은 전문위원회에서 그리고 영향평가와 만족도 조사는 아동 및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고 전문가 및 총괄부서에서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 아동영향평가의 방법: 방법론의 확립)

아동영향평가의 방법론을 고려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평가의 방법 즉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영향평가에는 평가대상과 범위에 적합한 방법론이 필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두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두 방법 각각의 장단점은 서로 연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량평가는 보다 간명하고 신속한, 보편성을 띤 분석을 제공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성평가가 갖지

7) 아동영향평가의 수행 방법에는 공무원 인터뷰 주요 결과가 반영됨.

- 공무원들의 협조와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며 해당 평가 결과가 피드백이 되고 이어질 수 있어야 함. 사업담당자들의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는 것이 장기적인 아동영향평가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 전문가들의 개입을 최대화하고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진행 중인 아동영향평가는 아직 시작 단계이며 정성평가 위주의 평가이고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는지 여부 등의 수준에 머물러 있음.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수행하되 아동의 참여와 해당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강제성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장치도 고려해 볼 만함. 정량평가가 가능하다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등이 확보되어야 함. 정책 프로세스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간단하더라도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못한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동영향평가는 공공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여러 복합적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여기에는 아동의 다차원적인 권리와 이익에 대한 논점도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영연방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아동영향평가가 정성평가의 성격을 띠어야 하고, 그렇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모든 영향평가에 있어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2; Corrigan, 2006; Mason and Hanna, 2009).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장단점이 명확하기에 그 둘의 결합이 필요하다. OECD(2010)의 경우 지속가능성 영향평가에 있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용해서 사용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유니세프의 크리거와 리바(Krieger and Ribar, 2009)도 아동영향평가에 있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통합적으로 시행해서 양 방법의 장점을 모두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핀란드의 경우에도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에 있어 이 두 평가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Taskinen, 2006).

방법론과 관련된 이러한 여러 논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타당한 방법은 정량평가를 통해 분석 전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정성평가를 통해 특정 집단(ex. 저소득집단)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영향평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사항과 4대 권리가 포함해야 하며 제도 수립시 언제(시기), 무엇을(대상), 어떻게(방법), 누가(주체), 왜(목적)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평가대상이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경우 아동 집단 내의 형평성과 참여를 강조하고,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닐 경우 아동의 권리 보장과 존중을 강조해야 한다. 이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혼합이 필요한 이유는 아동영향평가는 공공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의 다차원적인 권리와 이익에 대한 포괄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법·조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정량평가가 보다 더 적합하고,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정성평가가 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목적				
권리 보장 + 복지 증진				
법·조례		평가 대상	사업	
사전평가		평가 시기	사후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총괄부서·사업부서 공무원		평가 주체	전문가	

Ⅱ 그림 V-2 Ⅱ 아동영향평가 제도 및 지표 수립시 고려 사항

4) 아동영향평가의 시기와 적용

아동영향평가를 정책 단계 중 언제 실시하는지 즉 평가시점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평가 대상의 시행을 기준으로 사전에 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 평가를 할 것인지에 따라 지표개발의 내용은 물론 평가의 방향 및 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유니세프 캐나다도 아동영향평가가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과 후에 각각 시행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아동영향평가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Whalen, 2012).

(1)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사전 평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준이나 원칙을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적용시킬 수 있고, 이 때문에 의도치 않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사후 평가는 잠재적 영향력이 정확히 예측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예측된 영향력이 기대 결과를 낳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사전평가가 예상되는 효과를 증시한다면, 사후평가는 실제 발생한 내용과 변화를 중시해야 한다. Ⅱ 그림 V-3 Ⅱ은 각 사업에 대한 평가절차이다. 먼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전평가, 심층평가, 사전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사후평가, 사후만족도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연초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평가의 한 사이클이 시작되게 된다.

아동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사전평가	심층사전평가 대상사업 선정	심층사전평가	사전 만족도 조사
· 총괄부서 · 전문가	사업부서 → 총괄부서 검토	· 총괄부서 · 전문가	· 아동참여기구 · 전문가 · 사업부서	· 관련 아동 · 이해당사자 (온라인 혹은 모바일 참여)
모니터링	사후평가	심층사후평가 대상사업 선정	심층사후평가	사후 만족도 조사
· 아동참여기구 · 아동, 이해당사자 · 총괄부서 (온라인 혹은 모바일 참여)	사업부서 → 총괄부서 검토	· 총괄부서 · 전문가	· 아동참여기구 · 전문가 · 사업부서	· 관련 아동 · 이해당사자 (온라인 혹은 모바일 참여)

■ 그림 V-3 ■ 평가 절차

평가는 불평등이 없도록 정책이 다양한 대상자들을 고려했는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중간에 정책에 대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 해야 한다.

	대상 선정	평가								조사
	대상사업 선정	사전평가		심층 사전평가		사후평가		심층 사후평가		만족도 조사
		정량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정성	
실행 주체	전문 위원회	사업 부서	전문 가	사업 부서	전문 가	사업 부서	전문 가	사업 부서	전문 가	아동, 이해 당사자
검토 주체		총 괄 부 서	총 괄 부 서	총 괄 부 서	총 괄 부 서	총 괄 부 서	총 괄 부 서	총 괄 부 서	총 괄 부 서	전문가, 총괄 부서

■ 그림 V-4 ■ 평가 관련 주체

(2) 입법절차에 아동영향평가 의무화

아동영향평가의 수행과 적용에 강제성 부여 문제는 영향평가의 지속성과 위상 그리고 목표로 한 효과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 정치학과 행정학에서 정부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고전적인 모델로 이야기되는 이스턴(D. Easton)의 정치체계(political system)를 준거로 생각해보면,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나 집단의 의사를 정치의 장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른바 투입(input)의 단계와 더불어 산출(output)의 단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정책이 예산 및 인력과 함께 구체화되는 단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은 매우 지대하며 강제성이 부재할 경우 현실에서 아동영향평가가 그 어떤 변화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

강제성의 부여 방식에는 입법절차시 아동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정책의 핵심을 구성하는 정책 예산을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입법절차에 아동영향평가 의무화가 필요하다. 자치법규 입법절차에 따르면 입법예고 심사와 동시에 의뢰하는 심사 등에 대해 입법예고 심사 이후 법무담당관에게 법제심사의뢰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 결과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통상 입법예고 심사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을 하나의 공문으로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절차를 진행해야 그 다음 단계의 입법절차 수행이 가능하다.

표 V-4 입법절차에 의무화되어 있는 영향평가들

심사	수신처
규제심사	법무담당관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갈등진단	갈등조정담당관

표 V-4에 제시되어 있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과 유사하게 아동영향평가 결과 제출도 부분별로라도 시정 정책 프로세스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3) 아동친화예산 제도와의 연계

이와 함께 강제성 부여를 위해 아동영향평가 제도와 아동친화예산 제도의 연계도 고려해 볼 만하다.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등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하는 성인지 예산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는데, 성인지 예산은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근거하여 예산을 성인지적으로 편성, 집행한다. 또한 장애영향평가에서도 역시 장애영향평가를 의무화하여 예산을 책정할 때 장애인지예산을 제도화 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여타 평가 사례들은 아동영향평가에 있어서도 하나의 참고점이 될 수 있다. 아동영향평가 역시 영향평가를 준거로 아동친화예산을 실행하는 것을 추진해볼 수 있는 것이다. 아동친화예산은 아동영향평가를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V-5 ■ 아동영향평가 제도와 아동친화예산 제도의 연계 도식화

■ 그림 V-5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영향평가 제도에서는 건강, 역량·여가, 안전·보호, 돌봄을 그리고 아동친화예산 제도에서는 참여와 존중을 가시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 그림 V-6 ■ 아동영향평가 제도와 아동친화예산 제도

한편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및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지속가능한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평가’라는 용어 사용이 되도록 지양하여 평가를 받는다는 어감에서 오는 불필요한 거부감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정 주기를 정해서(ex. 5년 등) 최근 몇 년 간 평가를 수행한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여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팀 혹은 과 단위에서 일정 수의 사업을 자체 선정하여 여력이 되는 사업을 평가에 임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영향평가의 지속성과일반화를 확보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또한 형평성 있게 다양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절하다. 특히 아동 직접대상 정책이 아닐 경우는 연속으로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 편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2.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안)

아동영향평가 실행과 관련한 핵심 논점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새로운 지표 자체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한다. 먼저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동영향평가는 다음 **표 V-5**와 같이 각 영역별로 주요 과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목표함을 전제로 한다.

표 V-5 서울시 아동친화도시의 영역별 과제(김진석, 외 2016)

기반영역	성과영역
참여분야	건강분야
1. 아동참여 기반 구축 2. 아동 참여기구 재구축 및 활성화 3. 모든 생활에서의 아동참여 활성화	1.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내실화 2. 건강관련 생활습관 및 유해 환경 개선 3. 건강관리체계 및 정신건강관리체계
	안전분야
	4. 아동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5. 아동이 폭력,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구축 6.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신뢰체계 강화
	역량분야
	7.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적 진로모색을 위한 교육 지원 8. 개성을 키우는 다양한 역량개발 활동지원
존중분야	여가분야
4. 아동의 기본권리 존중 실현 5. 취약계층 아동의 권리 존중	9. 아동친화적이고 참여적 여가문화 조성 10. 아동의 놀이, 여가문화를 위한 공공의 책임 강화
	보호분야
	11. 아동보호체계의 공공 책임성 강화 12. 아동학대 예방조치의 강화 13. 지역사회 아동보호 원칙을 구현
	돌봄분야
	14. 영유아 돌봄의 공공성 확보 15. 방과후 아동돌봄 체계 확립 16. 방과후 아동급식 체계 개선

1) 아동영향평가 필수 요건

아동영향평가가 포함해야 하는 필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의 참여에 대한 고려 그리고 정책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주요 영역에서 기반이 되는 참여분야와 존중분야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필수 내용

〈권리〉

-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참여〉

-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 계획서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는가?
- 계획서에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가?



〈권리에의 영향(효과)〉

-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 특정 아동의 권리를 침해시킬 우려가 있는가?

서울시 아동영향평가의 수행과 지표 구성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적절한 조화와 적용이 필요하다. 이 때 아동영향평가 필수 내용을 적절하게 포괄해야 한다. 평가의 아동 권리 보장 항목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가능하다. 생존권은 건강, 주거환경(주거여건 만족도, 녹지 등 자연환경, 식품, 도서 등 기초적 물품 부족 등) 등을 평가하고 보호권은 약물, 범죄(강도·절도·기물파손 등) 등을 평

가하는 항목이다. 그리고 발달권은 놀이환경(놀이터 이용만족도 등), 사회적 관계(가족, 부모, 친구 관계 만족 등) 지역문화행사 참여 등을 평가하고, 참여권은 권리행사, 행정정보 획득 정도 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4대 권리를 보장했는지 여부는 대상 사업 선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적절한 사업 선정이후에 아동영향평가의 필수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⁸⁾.

표 V-6 평가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평가시 고려사항 (보장해야 하는 사항)	평가 대상 아동 (인구사회학적 고려사항)	평가 대상 정책 (법·조례/계획/사업)
4대 권리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성별(남/여)	6개 성과영역/2개 기반영역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 (이동권 등)	연령별(0~만6세/만7세~만9세/ 만10~만12세/만13세~만18세)	아동을 직접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정량평가는 우선 사업담당자가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정량평가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이 관련성 부분이다. 즉, 해당 정책이 아동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인지 혹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례인지 계획인지 사업인지를 체크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물리환경적 특성(장애, 학교밖, 시설 등)과 사회경제적 특성(저소득, 한부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집단의 요구도와 형평성을 고려했는지 여부 체크한다. 정성평가 시에는 해당 사업에 아동 권리 침해 요소가 있는지 계획 수립시 아동 이익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를 근거자료와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실시한다. 기존에는 정성

8)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에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주요결과가 반영됨.
 - 정량지표는 망라적이며 배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전사업 공통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함
 - 소수집단에 대한 정의는 아동권리협약을 반영해야 함
 - 정성평가는 대표성과 일반화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정량평가가 더 적합성이 높으나 문항 수준이 효과성을 결정할 것이고 실행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적절히 조합되는 것이 필요함

평가표 작성시에는 ‘그렇다-아니다’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우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않다-매우그렇지않다’ 등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정성평가 점수 산정은 -2(극도로 부정적 영향력)에서 +2(극도로 긍정적 영향력)의 범위로 평가하여 한눈에 해당 정책의 아동에 대한 존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서 Ⅱ 표 V-7 처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손쉽게 전체적인 평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합할 필요가 있다.

Ⅱ 표 V-7 Ⅱ 체크리스트 포함 내용

분 야	대 상	관련성	대 상 명	일반 권리/복지		특수 요구도 형평성
				참여	존중	
건강 안전 여가 역량 보호 돌봄	법 조례	간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O X	O X	O X
		직접	아동복지 지원 조례	O X	O X	O X
	계획	간접	시민건강국 사업계획	O X	O X	O X
		직접	아동건강관리 사업계획	O X	O X	O X
	사업	간접	건강도시 환경조성	O X	O X	O X
		직접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O X	O X	O X

Ⅱ 표 V-8 Ⅱ 주요 영역별 아동대상 사업 예시

건강	역량
- 필수예방접종 지원 -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 -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 사업 - 학교 주변 간접흡연 제재 정책 - 편의점 대상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교육	- 인권 교육 및 인성 교육 - 교육 멘토링 제도/학습보조 교사 제도 - 진로 직업 체험 및 대안교육 - 맞춤형 방과후 교육
안전	보호
- 아동카시트 장착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 자전거 이용 아동 안전 헬멧 지원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시설/미끄럼 방지 시설/신호등 차단시설 설치 - 보육시설, 방과후돌봄시설, 키즈카페 등 안전 인증제 - 마을안전지도 작성(성인, 아동 관점) 추진 - 아동대상 각종 폭력, 학대, 방임 가해자 처벌 및 관리	- 아동보호체계 종사자 전문 보수 교육 개발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추가 설치 - 아동학대 및 방임 발생 신고 및 조치 - 위기가정 발굴체계와 아동학대예방센터 간 협업 - 시설생활아동 대상 공동생활가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

여가	돌봄
- 서울시 체험형 놀이터 운영 - 도서관 및 운동장 확대 - 아동 문화카드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문화 바우처 - 동반 가족 비용 할인 제도	-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 동생행복프로젝트 - 중학교 방과후공부방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자기주도학습관 운영

사업의 경우 ■표 V-8■처럼 다양한 사업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각각의 지표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사업별 지표구성은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따라서 다소 단순하더라도 통일된 지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분야별로 이를 응용해서 적용하면 되는데 그 예시가 ■표 V-9■에 제시되어 있다. 소수(특수)집단 아동 비율의 경우 아동 직접대상 사업에 전체 아동 중 소외집단 아동 비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질적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

■표 V-9■ 분야별 주요 지표 예시

분 야	대 상	관련성	대 상 명	일반 권리/복지		특수	주 요 지 표
				참여	존중	요구도 형평성	
건강 안전 여가 역량 보호 돌봄	법 조례	간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O X	O X	O X	아동 참여 비율
		직접	아동복지 지원 조례	O X	O X	O X	아동 의견 반영 비율
	계획	간접	시민건강국 사업계획	O X	O X	O X	건강 시설 이용 가능 아동 비율
		직접	아동건강관리 사업계획	O X	O X	O X	특수 집단 아동 수혜율
	사업	간접	건강도시 환경조성	O X	O X	O X	전체 영향 집단 중 아동 비율
		직접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O X	O X	O X	학교밖 아동 비율 (학교 상담 등의 기회에서 소외 가능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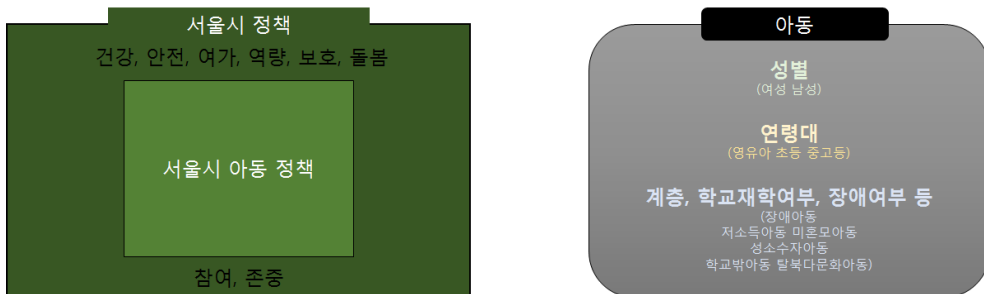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참여와 존중은 다른 분야의 기반이 되는 영역이다. 이는 아동영향평가가 기본 필수 사항 내용을 포괄한다. 존중 분야의 경우 아동 간접대상 정책에 대해 연령대별 의견 반영 비율을 포함하여 정책 시행 대상 아동의 연령대를 세분화 하도록 한다. 아동친화도시 평가와 연계하여 18세 미만으로 설정시 영아, 유아, 초등 및 중고생이 혼합되나 연령대에 따라 참여의 요구나 권리에 대한 생각이나 참여방식, 요구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는 필수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지표는 성별 구분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표 V-10 참여·존중 정량·정성 지표

정량평가	분야	평가 대상		정량지표	
	참여	법·조례 / 계획	아동 직접대상	소수 ⁹⁾ 집단별 아동 비율 전체 아동 중 소외집단 아동 비율 청소년 중 참여 청소년비율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참여율 아동청소년 의견 반영 비율	
			아동 간접대상	전체 정책 대상 중 아동 비율	
		단위사업 / 세부사업	아동 직접대상	소수 집단별 아동 비율 전체 아동 중 소외집단 아동 비율 청소년 중 참여 청소년비율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참여율 아동청소년 의견 반영 비율	
			아동 간접대상	전체 수급권자 중 아동 비율 전체 수급권자 중 소수 집단 아동 비율	
			존중	법·조례 / 계획	아동 직접대상
	성별, 연령대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아동 간접대상	전체 대상 중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소수 집단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성별, 연령대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단위사업 / 세부사업	아동 직접대상	소수 집단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전체 아동 중 소외집단 아동 비율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참여율 아동청소년 의견 반영 비율 성별, 연령대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아동 간접대상	전체 대상 중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소수 집단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아동 성별, 연령대별 의견 반영 비율			
	정성평가	아동 권리 보장			
•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아동 참여 보장					
•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 계획서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는가?					
• 계획서에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가?					
권리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 특정 아동의 권리를 침해시킬 우려가 있는가?					

2) 분야별 평가지표(안)

정책 중에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에 대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실질적인 지표 내용 차이를 크게 두는 것은 평가의 진행과정과 결과적인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은 아동의 참여와 존중을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선에서 주요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이때 정책의 성격별로 지표가 다소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주요 분야 중에 정책 성격이 교육 사업이라면 교육을 받은 당사자(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의무화 하는 등 질적인 평가를 강화해야 하고 지원 사업이라면 수혜율과 소수(특수)집단 수혜비율 그리고 각각의 예산 지출액 비율을 평가하는 정량적인 평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때 소수(특수) 집단은 물리환경적 특성(장애, 학교밖, 시설 등)과 사회경제적 특성(저소득, 한부모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 그림 V-7 ■ 처럼 서울시 정책 중에서 아동 정책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해당 정책이 아동 정책이든 아니든 건강, 안전, 여가, 역량, 보호, 돌봄이라는 주요 영역에 주목하면서 아동의 성별, 연령, 사회적·물리적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그림 V-7 ■ 서울시 정책과 다양한 아동집단

9) 장애, 시설, 학교 밖, 미혼모, 탈북, 다문화, 성소수자 등

표 V-11 건강·안전·여가·역량·보호·돌봄 정량·정성 지표

정량 평가	분야			정량지표
	건강· 안전· 여가· 역량· 보호· 돌봄	법· 조례 / 계획	아동 직접 대상	소수 집단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아동 간접 대상	전체 의견 수렴 중 아동 의견 수렴(반영) 비율
				전체 필요 욕구 중 아동 필요 욕구 수렴 및 반영 비율
	분야		평가 대상	정량지표
	건강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건강서비스 예상 수혜율 (질병 예상 감소율)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건강서비스 예상 수혜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건강서비스 예상 수혜율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건강서비스 예상 수혜율
	안전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안전사고 예상 감소율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안전사고 예상 감소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안전사고 예상 감소율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안전사고 예상 감소율
	여가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문화활동 예상 참가율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문화활동 예상 참가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문화활동 예상 참가율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문화활동 예상 참가율
	역량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교육활동 예상 참가율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교육활동 예상 참가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교육활동 예상 참가율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교육활동 예상 참가율
	보호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보호서비스 예상 수혜율 (아동학대 예상 감소율)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보호서비스 예상 수혜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보호서비스 예상 수혜율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보호서비스 예상 수혜율
	돌봄		아동 직접 대상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돌봄서비스 예상 참가율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돌봄서비스 예상 참가율

		아동 간접 대상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돌봄서비스 예상 참가율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돌봄서비스 예상 참가율
정성 평가	아동 권리 보장 평가 내용		
	•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아동 참여 보장		
	•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 계획서에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는가? • 계획서에 아동에게 해당 내용을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가?		
	권리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 특정 아동의 권리를 침해시킬 우려가 있는가?		

정성지표에서는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아동 권리를 중심의 필수 내용을 포괄하며, 전문가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때 소수자에 대한 범위 및 개별화된 접근의 내용과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추후에 이루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중요한 것은 정량지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이다. 정량지표를 통해 영향평가의 영역별로 공통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시기는 정책 시행 전과 후로 구분되는데 사전평가에서는 예상되는 정책 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사후평가는 실제적인 내용과 아동에 미친 환경 및 삶의 질 변화로 인한 권리 증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단, 사전영향평가지 정량지표는 계산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추정치로 산출되지만 이는 목표 혹은 대상 고려에 대한 정책 실행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에 이 역시 큰 의미를 가진다.

법·조례 및 계획에 비해서 개별 사업들의 경우 다양한 사업과제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표의 개별성(혹은 통일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태조사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지표나 실적지표는 사전영향평가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통지표 적용이 바람직하다. 6개 분야별 공통점을 참여와 존중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조례 및 계획에서 아동 직접대상일 경우는 제도부문 특성을 고려하고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했는지를 중심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접대상일 경우에도 당사자 의견을 수렴했는지와 욕구를 반영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전체 아동 중 소외집단 아동 의견반영 비율(참여·존중영역과 동일)
- 소수 집단별 아동의견 반영 비율 (형평성 평가 지표로 동일하게 적용)
- 연령대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참여·존중영역과 동일)

법·조례 및 계획에서 아동 간접대상 정책을 평가할 때는 당사자 의견을 수렴했는지와 욕구를 반영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사업에서 아동 직접대상 정책을 평가할 때는 아동의 예상 참여율과 수혜율(지역 청소년 인구 대비 혹은 증감율)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 부문은 성과지표로 효과를 비교 검증할 수 있으나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내용 성과지표 검증이 제한된다. 직접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비율을 토대로 효과의 보편화에 대한 예상되는 기대치 측정이 필요하다. 해당 영역별 확인대상 지표요소는 사업과제에 따라 다양하나 핵심적인 가치와 목표 선정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에서 아동 간접대상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전체 수요자 대비 아동의 예상 참여율과 수혜율을 예측한다. 아동 간접대상 사업의 경우 전체 연령대를 포함하므로 이 중 (소수)아동 지원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3. 아동영향평가 질적 지표 결과 제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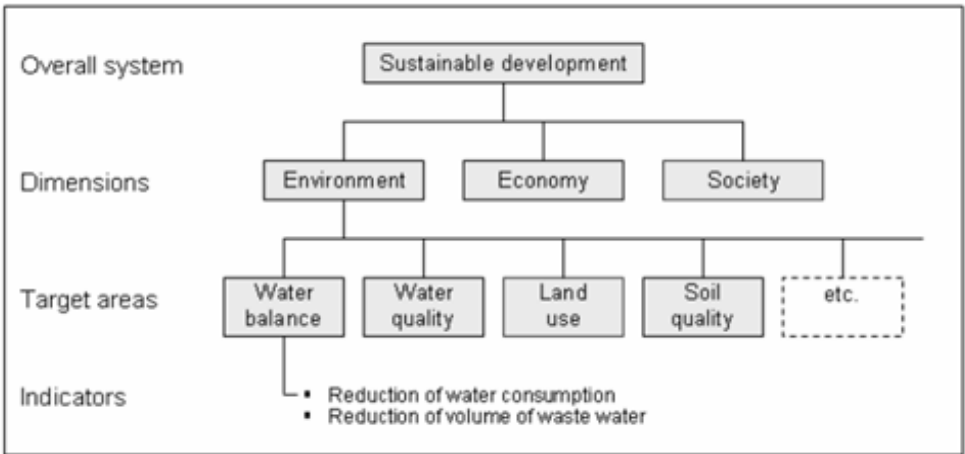
아동영향평가의 결과 제시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는 영향평가의 영향력 확대와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질적 평가에 대한 결과 제시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OECD(2010)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가이드에서 제시한 신호등 방식을 채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호등 색깔은 최종 평가에 대한 질적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제안된 정책의 영향력 평가 결과를 부정적일 때는 빨간 색으로, 중립적일 때는 노란색으로, 긍정적일 때는 녹색으로 제시한다.

신호등 방식은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그리고 포괄적인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통해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총체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는 부문별 강점과 약점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고 최적화된 정책을 만드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신호등 방식은 광

범위한 기초 자료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가용한 정보를 사용해서 분명하고 투명하게 평가한다. 아울러 이 방식은 정책이 만들어내는 각기 상이한 충위를 측정하고 많은 다양한 결과들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여러 분석들이 간과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이에 더하여 평가의 간명함으로 인해 사용자가 쉽게 적용할 수 있고,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위원회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또한 지니고 있다.

신호등 방식의 평가는 아래 그림처럼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상위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세 가지 차원 즉 환경, 경제, 사회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각 차원별로는 타겟 영역이 설정된다.

아래 그림에서는 환경분야가 예시로 제시되어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평가는 세 개의 동등한 차원으로 구성된다. 환경은 13개의 타겟 영역, 경제는 13개, 사회는 17개로 구성된다. 지표수치의 평균 값이 타겟 영역 값에 해당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의 값은 타겟 영역 값의 평균에서 얻어낸다. 이 평가는 일종의 질적 도구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결과를 평가해서, 그것의 절대적 공헌치보다는 해당 프로젝트가 어떻게 상황을 좋게 혹은 나쁘게 만드는지를 분석한다.



■ 그림 V-8 ■ 지속가능성 지표의 위계적 구조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sustainability compass)

출처: Canton of Berne, 2008

신호등 방식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방법이다.

이 프로젝트는 엑셀 탭(sheet)의 ‘입력값(input)’을 사용해서 평가됨. 이 탭(sheet)에서 점수는 포인트 척도(scale)에 따른 다양한 지표들에 입력됨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각 지표에는 다섯 개의 박스가 주어짐. 지속가능한 발전 영향 평가의 점수 척도는 다음과 같음: 매우 부정적-2, 부정적-1, 중립적0, 긍정적+1, 매우 긍정적+2. 각 지표에 합당한 박스는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반드시 체크 표시되어야 함

만약 지표가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0>박스가 체크 표시되어야 함

각각의 평가는 주석(comments)으로 완성될 수 있음

완결된 평가를 얻기 위해서, 점수는 모든 지표에 주어져야 함.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가치로부터 더 높은 수준(중간 as means)을 평가할 수 없음. 이 중간치 계산 과정은 엑셀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지표> → <타겟 영역> → <지속가능성 차원> → <최종 평가>의 순서를 따라 자동적으로 수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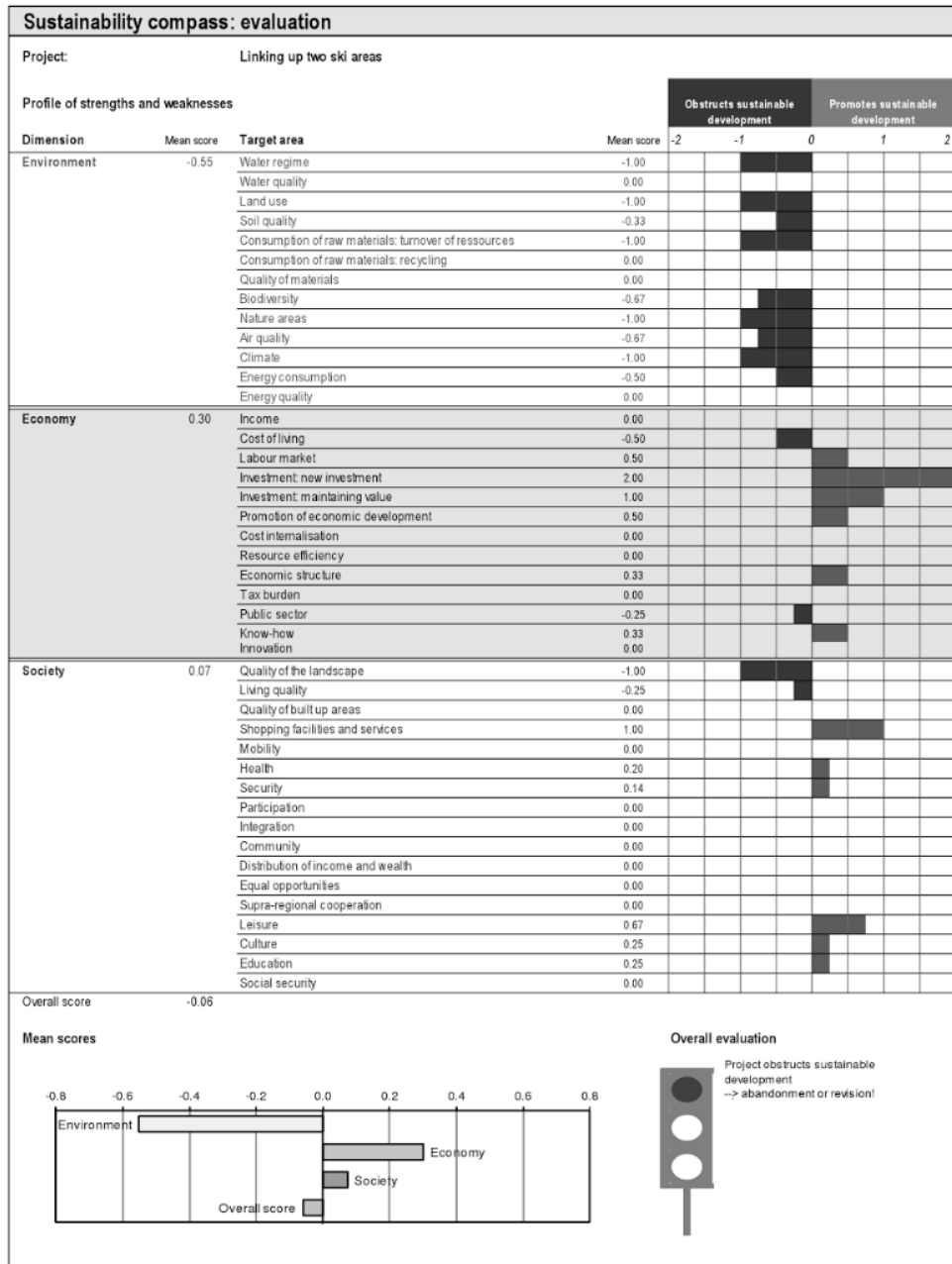
결과는 엑셀의 <평가> 탭(sheet)에 나옴

이러한 신호등 방식은 결과에 대해 기술적으로 해석하고 평균치를 합쳐서 결과를 도출한다. 최종 평가는 -2(극도로 부정적 영향력)에서 +2(극도로 긍정적 영향력)의 범위로 나타난다. 신호등의 색깔은 최종 평가를 쉽게 해석하는 질적 지표이다.

- 초록색: 최종 점수가 양수(+)
 - : 환경, 경제 사회가 영(0)이거나 양수(+)임
 - 좀 더 최적화 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작업
- 노란색: 최종 점수가 영(0)이거나 양수(+)
 - : 환경, 경제, 사회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마이너스 평균이 나올 경우임
 - 정책 수정이 필요함
- 빨간색: 최종 점수가 음수(-)
 - 정책을 수행하지 말거나 수정해야 함

신호등 방식을 사용한 구체적인 평가 사례는 아래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그림은 스위스에서 두 주요 스키지역을 연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결과이다. 평가결과 해당 프로젝트는 환경에는 부정적 영향을, 경제에는 긍정적 영향을 그리고 사회에는 혼합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평가는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2부터 2사이의 질적 스케일에서 -0.08을 기록했다(OECD, 2010: 27-28).

Figure 9.1. Traffic light presentation of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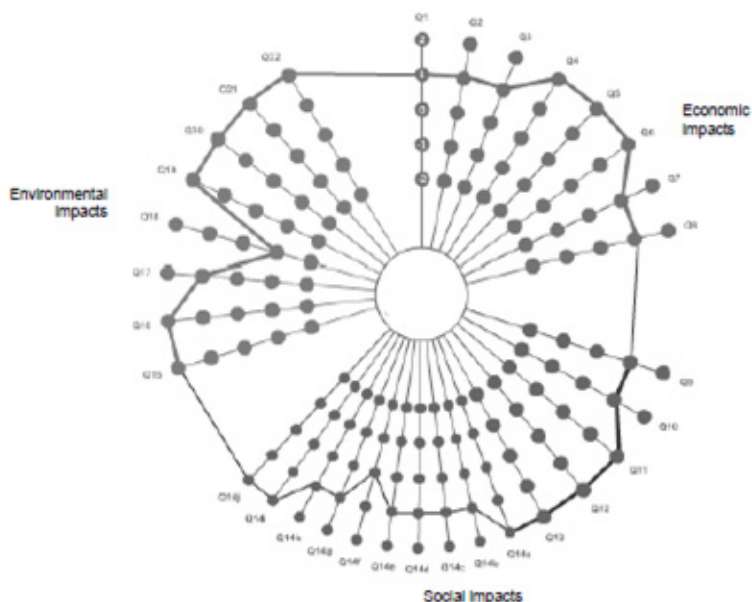


Source: Canton of Berne (2008), *Sustainability Compass Guide*, Canton of Berne, Berne.

그림 V-9 평가 결과

출처: OECD, 2010: 28

신호등 방식에 더하여 OECD 지속가능성 영향평가에서는 거미줄 방식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참고할 만하다. 이는 영국의 지속가능성 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것으로 제안된 정책의 부문별 영향력과 경감책을 포함하는 변수들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세 영역에서의 여러 하위 항목들의 영향력 정도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 그림 V-10 ■ 지속가능성 영향평가의 거미줄 다이어그램
(Spider diagram of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출처: OECD, 2010: 29

위의 두 방법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아동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시 정책 전체에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한다면, 보다 명료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이 두 방식은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영향평가를 일반화하고, 그 영향력과 효과를 증대시킴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미숙, 김혜련, 김광혁, 양심영, 이주연, 하태정, 201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석, 김민, 송다영, 최영, 변혜진, 정형준, 2016.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로드맵 수립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영미, 2016. 「영유아 권리에 기초한 아동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적용」.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16-2018)」.
- 성북구, 2016. 「아동친화도시」.
- 박금식, 하정화, 손주영, 박지영, 2017.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영균, 조홍식, 장승원, 2014.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중훈, 2010. 「정책만족도 조사의 메타평가 및 제도 개선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손을춘, 2013.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741. 국회입법조사처.
- 여성가족부, 2016.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염유식, 김정미, 이진아, 2013. 「2013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사)한국방정환재단.
- 이지수, 정건희, 오성우, 이상지, 정윤희, 2016.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군산시 아동실태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체계구축」.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한국교육개발원, 2009. 「교육환경평가 기준 및 지표 개발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공공정책을 변화시키는 성별영향분석평가 100가지 사례」.
- 환경부, 2016. 「환경영향평가제도」.

- Canton of Berne, 2008. *Sustainability Compass Guide*. Berne: Canton of Berne.
- Child Helpline International, 2012. *Child Impact Assessment Manual: Assessing Your Child Helpline's Impact on Children*.
- Children & Young People Commissioner, 2015. *Child Impact Assessments*. ACT Government.
- Corrigan, C. 2006.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hild Impact Statements in Ireland. Office of the Minister for Children.

- European Commission, 2002. Impact Assessment in the Commission. Strategic Planning and Programming Unit, European Commission.
- Freeman, M. 1997. The Moral Status of Children: Essays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Hague and Boston: Martinus Nijhoff.
- Hanna, Kirsten, Hassall, Ian and Emma Davis, 2006. "Child Impact Reporting", *Social Policy Journal of New Zealand*, 29: 32-42.
- Hodgkin, R. 1999. Child Impact Statements 1997/98: An Experiment in Child-Proofing UK Parliamentary Bills, National Children's Bureau.
- Kriegar, Y. and E. Ribar. 2009. "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 of Economic Policies: A Case Study from Bosnia and Herzegovina".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 19(2): 176-201.
- Llywodraeth Cymur Welsh Government. 2014. Children's Rights Scheme 2014.
- Mason, N. and K. Hanna. 2009. Undertaking Child Impact Assessments in Aotearoa New Zealand Local Authorities: Evidence, Practice, Ideas. Office of the Children's Commissioner, New Zealand.
- OECD. 2010. Guidance on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 Paton, L and G. Munro. 2006. Children's Rights Impact Assessment: The SCCYP Model. Scotland's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 Sylwander, 2001. Child Impact Assessments.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weden.
- Taskinen, S. 2006. Child Impact Assessment. Finnish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CEF, 2013. *Children's Rights in Impact Assessments*. UNICEF and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 Whalen, C. 2012. "Taking Children's Rights Seriously". The National Conference of Research Data Centres on Evidence Based Policy Making. UNICEF Canada.
- Whalen, Kotze, Pollack. 2014. *Child's Rights Impact Assessment: A Primer for New Brunswick*. New Brunswick Child & Youth Advocate.
- Whalen, C., Kotze, G., and C. Pollack, 2015. *Child's Rights Impact Assessment: A Primer for New Brunswick*. New Brunswick Child & Youth Advocate.

<http://fra.europa.eu>

<http://www.msd.govt.nz/uncroc>

<http://www.who.int/hia/policy/barriers/en/>

벨파스트 사례:

www.belfastcity.gov.uk/nmsruntime/saveasdialog.aspx?IID=18374&sLD=1

에든버러 사례:

학교관리

http://www.edinburgh.gov.uk/directory_record/580567/budget_review_within_schools_management_and_support

신선과일

http://www.edinburgh.gov.uk/directory_record/580568/change_the_way_fresh_fruit_is_provided_in_primary_schools

벨파스트 사례:

Euality Screening Template

http://search.belfastcity.gov.uk/s/redirect?collection=bcc-website&url=http%3A%2F%2Fwww.belfastcity.gov.uk%2Fnmsruntime%2Fsaveasdialog.aspx%3FIID%3D18374%26sID%3D1645&index_url=http%3A%2F%2Fwww.belfastcity.gov.uk%2Fnmsruntime%2Fsaveasdialog.aspx%3FIID%3D18374%26sID%3D1645&auth=%2B3%2BdbvOPL16jMWBrLTk5%2BQ&profile=_default&rank=1&query=child+impact+assessment

레저 전환

http://search.belfastcity.gov.uk/s/redirect?collection=bcc-website&url=http%3A%2F%2Fwww.belfastcity.gov.uk%2Fnmsruntime%2Fsaveasdialog.aspx%3FIID%3D9652%26sID%3D1645&index_url=http%3A%2F%2Fwww.belfastcity.gov.uk%2Fnmsruntime%2Fsaveasdialog.aspx%3FIID%3D9652%26sID%3D1645&auth=IJb1Us1YrIIY4H06%2Fv0X9A&profile=_default&rank=9&query=child+impact+assessment

Abstract

Research on Seoul Child Impact Assessment Index

Eeh-Eun Song¹⁾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ully recognizing the fact that children rights are ignored with lack of proper channel to deliver their wants and needs, is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Seoul into Child Friendly City. The goal is to apply children's perspectives into policies and law system in general. As part of such endeav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currently building necessary institutions to perform Child Impact Assessment. Basically, Child Impact Assessment measure the influence policies or legislatures have on children. This has specific implications for the achievement of policy goals set forth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triving for child rights and welfare. The necessity of Child Impact Assessment can be addressed in two dimensions of human right, and benefit and efficiency. Task at hand with the utmost importance is to understand Child Impact Assessment thoroughly and to develop an index.

This research seeks to develop an index by which the impact government policies have on children can be systemically and comprehensively analyzed and evaluated. This research have explored not only the principal agent and timing of the assessment, but also tackled the issues on methods and the subjects of assessment, and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delivery system of assessment index. By doing so, it has provided a useful guide for better understanding of Child Impact Assessment and made suggestions for policy improvements. The findings and results of this research shall make policy related considerations on vulnerable children easier, and build a foundation for more effective and public execution of budget.

Following methods are used to develop Child Impact Assessment Index. First, existing Child Impact Assessment Index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reviewed. While examining main issues on Child Friendly City project, the overall

1) Family Team, Family Policy Office of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direction and progress of Child Impact Assessment and Child Friendly City projects are explored using data from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cond, previous Child Impact Assessments of Korea and abroad are reviewed. Third, Delphi survey is performed. Lastly, as a way of internal validation on the index development process, we consulted professionals.

Subject of Child Impact Assessment should include legislatures, ordinances, long-term plans, licensing plans and etc. Thus, the range of institutions and domains subject to Child Impact Assessment as of now need to be broadened. Also, the contents and points of emphasis should differ by the subject. For example, those directly related to children should stress equity and participation among diverse children groups and those that are not directly linked to children should strive to achieve rights and respect of children. Child Impact Assessment should not be limited to a particular project. It should evaluate ordinances, plans and unit projects as well. Additionally, in order to perform Child Impact Assessment effectively and continuously, department in charge of the assessment should be clearly appointed. Proper combination of professional evalu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crucial as well. Survey on policy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related parties is a way of respecting them and assure their participation.

As for methodolog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needs to be properly combined as each has clear advantages. Quantitative evaluation can broadly map out the analysis and qualitative evaluation can provide supplemental details on specific subgroups. Evalu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preliminary evaluation and post evaluation. Preliminary evaluation should concentrates on expected effects of the assessment while post evaluation focuses on actual happenings and changes. Minimizing task loads and psychological burdens of public servants responsible for the assessment, and providing institutional constraints can have positive influence on making Child Impact Assessment more sustainable. Overall context of assessment index should evaluate whether the participation of and respect toward children are well engaged in diverse range of policies in major sectors of society.

부록

Ⅰ 부록 1

Ⅰ 부록 2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부록 1] 기본 체크리스트(공통)

표 1 사전평가 체크리스트(사업부서_강동구)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해당 정책이 다음의 법규나 조례와 갈등우려가 있습니까?			
1) UN아동권리협약	()	()	()
2) 어린이·아동·청소년 법규	()	()	()
3) 기타 법규 및 타조례	()	()	()
2. 해당 정책이 다음의 아동권리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1) 생존권	()	()	()
2) 보호권	()	()	()
3) 발달권	()	()	()
4) 참여권	()	()	()
3. 해당 정책은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	()	()
4. 해당 정책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까?	()	()	()
5. 해당 정책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까?	()	()	()
6. 해당 정책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까?	()	()	()
7. 해당 정책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	()
8. 해당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심층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1) 사전심층아동영향평가	()	()	()
2) 사후심층아동영향평가	()	()	()
9. 해당 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 () ()	높음 보통 낮음	()
10. 해당 정책의 아동권리 침해의 방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이나 보완계획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예: 사후영향평가, 전문가 자문, 아동당사자의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			

표 사전평가 체크리스트(총괄부서_강동구)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작성 관련			
1) 아동영향평가 기초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	()	()
2)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	()	()
3)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	()
2. 아동권리협약 및 타법규·조례와의 관계 관련			
1) 아동권리협약 및 타법규·조례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는가?	()	()	()
2) 아동권리협약 및 타법규·조례와의 관계상 갈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였는가?	()	()	()
3. 아동권리 관련			
1)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	()	()
2)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4.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 관련			
1) 특정 유형의 아동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2)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5.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 및 홍보 관련			
1) 해당업무의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검토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2)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의 존재여부와 기능을 검토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3) 해당업무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계획을 포함시켰는지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6. 사전/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자문, 기대효과 관련			
1) 사전심층영향평가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	()	()
2) 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	()	()
3) 해당업무가 아동권리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타당하게 검토하였는가?	()	()	()

표 1 사후평가 체크리스트(사업부서_강동구)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아동권리협약 및 타법규·조례와의 관계 관련				
1) 해당업무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 기타 법규와 조례등과 갈등이 없었는가?	()	()	()	
▶ 갈등 내용				
2. 아동권리 관련				
1) 생존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	()	()	
2) 보호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	()	()	
3) 발달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	()	()	
4) 참여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	()	()	
▶ 근거(ex. 사업실적, 통계자료, FGI, 설문결과, 자문 등)				
3.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 관련				
1)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	()	()	
2) 부정적 영향을 받은 아동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 배제 및 차별된 특정유형의 아동유형, 조치내용				
3)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	()	()	
▶ 근거				
4.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 및 홍보 관련				
1) 해당업무의 기획 시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아동	()	()	()
	이해당사자	()	()	()
2)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아동	()	()	()
	이해당사자	()	()	()
▶ 의견수렴 내용 및 장치				
3) 해당업무를 아동과 이해당사자 및 구민에게 적절한 표현과 방식으로 홍보하였는가?	아동	()	()	()
	이해당사자	()	()	()
	구민	()	()	()
▶ 대상별 홍보방식 및 실적(ex. 홍보물, 웹사이트, 성과보고자료집, 보고회 등)				
5. 사전/사후영향평가 및 자문, 기대효과 관련				
1) 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	()	()	
▶ 심층영향평가 방식 선택 및 자문내용제시 ()아동대상의 평가조사 ()아동권리모니터링 ()아동참여기구 검토 ()외부 전문가 자문				
2) 아동의 권리 증진 효과를 적절하게 검토하고 있는가?	()	()	()	
▶ 아동권리 증진 효과를 검토 위한 근거(ex. 사업실적 및 통계자료의 사전 사후 비교, 설문 및 자문반영 등)				

Ⅱ 표 Ⅱ 사후평가 체크리스트(총괄부서_강동구)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아동영향평가 점검표 작성 관련			
1) 아동영향평가 기초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	()	()
2) 아동영향평가 점검사항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	()	()
3)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	()
2. 아동권리협약 및 타법규·조례와의 관계 관련			
1) 아동권리협약 및 타법규·조례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는가?	()	()	()
2) 아동권리협약 및 타법규·조례와의 관계상 갈등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였는가?	()	()	()
3. 아동권리 관련			
1)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였는가?	()	()	()
2)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4.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 관련			
1) 특정 유형의 아동이 배제되거나 차별받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2)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5.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 및 홍보 관련			
1) 해당업무의 계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검토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2)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의 존재여부와 기능을 검토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3) 해당업무에 대한 계획 및 성과 대해 아동 및 청소년, 이해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	()	()
6. 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자문, 기대효과 관련			
1) 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	()	()
2) 해당업무가 아동권리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타당하게 검토하였는가?	()	()	()

타 영향평가 요약

성별영향분석평가¹⁾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의

-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 성평등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3. 영향평가의 법적근거(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0조의2

1) 성별영향평가, 성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말이 한국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차이를 가지고 사용된 것은 아님.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던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음. 하지만 이 용어는 모두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법제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내용(박영균, 조홍식, 장승원, 2014: 22).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말은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라는 법이 제정되면서 사용된 말인데, 기존 명칭은 성별영향평가였음. 분석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분석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추정됨.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02)-9개 기관(10개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04)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05)
(05)53개 기관/85개 과제 -> (11)292개 기관/ 2954개 과제
- 06년 기초자치단체, 07년 시, 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정 및 지침마련 시행(12.3.16)

4. 평가주체

-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46-56p (여성가족부, 2016: 46-56)

5. 영향평가 대상정책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복지, 보건, 지역환경, 산업·경제, 교육·문화, 일반행정, 농어업, 국방·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시행되었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 사례: 서울 동작구에서 2014년 시행한 정신건강증진사업

- 정신건강 상담 여성이 58%에 달하고 여성 우울증이 남성의 2배라는 점에 착안해서 2014년 이후 여성 우울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그리고 찾아가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 즉 공공정책을 변화시킨 것. 그래서 남성보다 2배 많은 여성의 우울증을 호르몬 및 임신출산양육과정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 여성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한 것(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37)

6. 영향평가 적용기관(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 (전북연구원 여성정책 연구소)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제10조의2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중앙행정기관: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02)-9개 기관(10개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04)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05)
(05)53개 기관/85개 과제 → (11)292개 기관/2,954개 과제
- 06년 기초자치단체, 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정 및 지침 마련 시행(12.3.16)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 환경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전략적인 종합 체계
-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

3. 환경영향평가의 법적근거

- 2012년 7월 그간 ‘환경정책기본법’ 과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 을 시행
-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 은 ‘환경정책기본법’ 의 사전환경성검토 규정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개편.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라는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 또한 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경우 법령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만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평가주체

- 환경영향평가 작성 주체는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이나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 하지만 사업자는 전문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절차(환경부 소책자 41p 전면 그림)
 - 평가서 초안의 의견수렴: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환경부장관, 승인기관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평가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평가서 초안을 공고,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평가적 작성과 협의요청: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 기관에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평가서를 사전검토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함
 - 평가서 검토와 협의: 환경부는 평가서 내용과 주민의견 수렴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45일 이내(연장시 60일)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협의내용의 반영: 승인기관은 사업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통보하여야 함
 -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사업승인 기관과 협의기관인 환경부는 협의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부와 승인기관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 계획과 사업의 이해, 스코핑, 주민의견 수렴, 보고서 작성 총괄, 종합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충실한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과 대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평가 대행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과 협의업무 등을 총괄

-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그 작성 대행을 의뢰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업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며, 제1종 평가업은 평가서와 사후 환경영향 조사서 작성 대행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2종 평가업은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 평가,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 마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평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 (1) 골프장 건설처럼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 (2) 자연공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
- (3) 매립사업, 댐 건설 등 환경영향이 오랜 기간 동안 또는 복합적으로 발생해 환경영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 (4) 대기, 수질오염 등 복합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관련 계획 등 17개 분야 96개 계획을 대상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²⁾: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정사업 등 총 17개 분야 78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보전이 필요한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5000㎡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이 해당.

- 평가항목:

- (1) 전략환경평가: 정책계획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과 일관성, 계획의 적정성과 지속성 등 3개 항목, 개발기본계획은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 2개 항목

2) 구체적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 소책자 60-65p 참고

(2)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등 6개 분야의 동·식물상, 자연 환경자산, 대기질, 온실가스, 기상 등 21개 항목으로 하고 있음.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 대기질·악취 등 8개 분야 16개 항목.

- 평가항목 선정은 사업으로 영향받는 모든 환경인자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스코핑 절차를 거쳐 결정

※ 스코핑: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항목과 범위를 미리 정하는 것을 지칭. 21개 평가항목 중 사업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의 질적 향상과 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음. 스코핑 절차는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이를 심의하여 평가항목과 평가범위 등을 결정.

- 평가준비서 내용

(1) 대상사업의 목적과 개요

(2)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토지이용구상안)

(4) 지역 개황

(5) 평가항목, 범위, 방법 등의 설정 방안

(6) 약식 절차 해당 여부

(7) 주민 등 의견수렴 방안, 절차를 생략하고자 할 때 대체 수렴 방법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반영 여부 등

- 스코핑 제도의 효과: 중요한 내용은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의 질을 높이고 필요 없는 내용은 제외하여 평가소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주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게 됨

절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구성 주체: 환경부장관, 계획수립기관장, 승인기관장 또는 사업자
- 구성 시기: 환경영향평가 등이 실시될 때마다 구성
- 기능: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결정, 협의내용 조정, 약식절차 실시 여부, 설명회와 공청회 생략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
- 위원회 구성: 주민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 협의기관장, 계획수립기관장 또는 승인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할 지자체장 추천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

- 환경영향평가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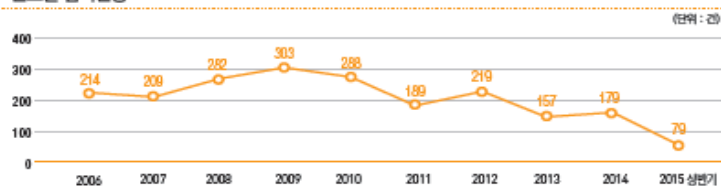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계	1982~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상반기
계	67,416	24,734	4,329	5,094	6,427	5,264	5,095	4,649	4,518	2,905	2,931	1,470
환경영향평가	5,180	3,061	214	209	282	303	288	189	219	157	179	79
전략환경영향평가	2,416	-	-	-	-	-	-	-	386	824	811	39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5,957	-	-	-	-	-	-	-	1,096	1,924	1,941	996
사전환경성 검토	53,863	21,673	4,115	4,885	6,145	4,961	4,807	4,460	2,817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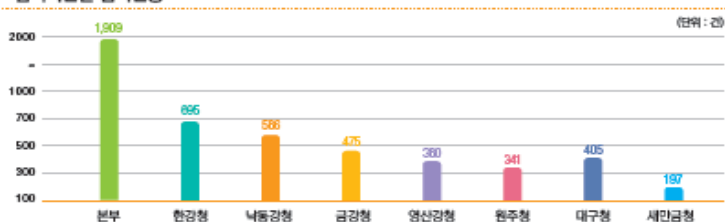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시행(2012. 7. 21)으로 종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개발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변경

- 1982~2015년 상반기까지 총 5,180건을 협의하였으며, 환경부 본부에서 1,909건 (36.9%), 지방환경관서에서 3,271건 (63.1%) 협의

연도별 협의현황



협의기관별 협의현황



건강영향평가

1.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 건강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포를 파악하는 도구, 절차, 방법 또는 그 조합이라고 정의
- 다만 한국의 경우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일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음

2. 건강영향평가의 목적

- 대상사업의 시행이 야기하는 건강결정요인의 변화로 인해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
 - 주요 건강결정요인은 생물학적(연령, 성, 유전자), 개인적(흡연, 음주, 운동, 음식 섭취, 개인의 안전, 여가활동), 물리적(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사고) 및 사회·경제적(고용, 수입, 주거, 교육, 사회적 단절, 범죄 발생률, 공공서비스로의 접근성) 요인으로 구분해서 제시. 그런데 제도 도입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 요인인 물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
- 인체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적 영향과 건강불평등을 최소화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사결정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건강영향평가는 환경/건강 전문가, 사업자, 지역주민, 승인기관, 기타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공중참여를 용이하게 함
- 당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건강영향과 건강불평등을 확인

3. 건강영향평가의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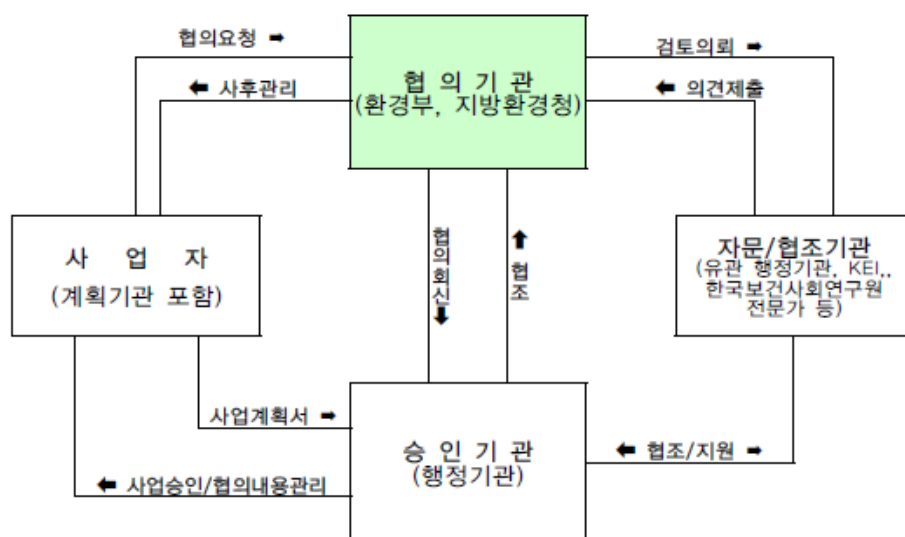
- 환경보건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평가 등) 제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건강영향평가 실시
- 제13조 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 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4. 건강영향평가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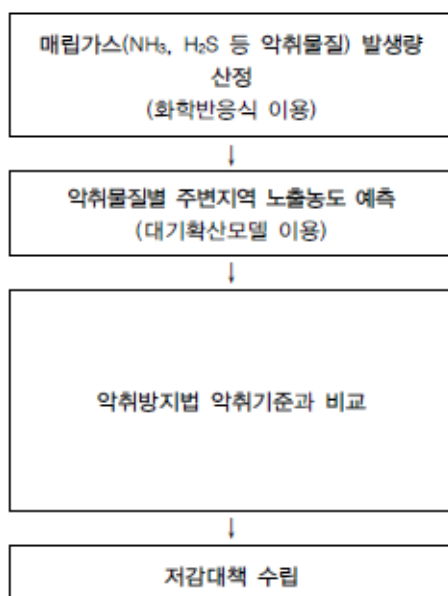
- 건강영향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협의 절차를 사용. 아래 그림에 제시되어 있듯이,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며 이 과정에서 평가서작성 심의위원회(스코핑 위원회), 관계행정기관의견수렴, 주민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함. 건강영향평가결과서 내용의 검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부장관이 협의권자인 경우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가 수행하고, 지방청장이 협의권자인 경우는 유역청(또는 지방청) 환경평가과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지역)환경보건전문가 풀을 이용하여 수행
- 건강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 그런데 건강영향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에서 운영. 따라서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와 유사하게 KEI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 다만 관련 전문가 자문 시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자문 필요
- 건강영향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와 통합하여 건강영향을 검토
- 건강영향평가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음

-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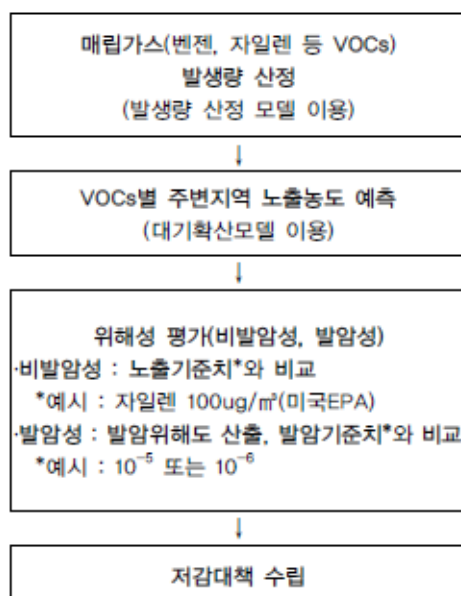
☞ 건강영향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에서 평가 및 사후관리가 진행됨



〈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



〈 건강영향평가 〉



부록그림 9. 환경영향평가와 건강영향평가의 차이점

5.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

- 한국의 경우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일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계획,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음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건강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평가대상 지역을 설정하도록 규정. 아래의 표는 건강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제시한 것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해당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너지 개발	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시설의 설치사업 - 최종처리시설 중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매립시설 - 최종처리시설 중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매립시설 - 중간처리시설 중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설치사업. 다만,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건강영향평가 적용기관

- 환경부에서는 사업유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인자를 제시
 (1)산업단지 (2)화력발전소 (3)매립장 (4)소각장 (5)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아래의 그림은 소각장의 사례

- * 일반폐기물 소각로 및 지정폐기물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계수를 통하여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물질을 제시함

물질명	물질명(악취 및 비발암성)	물질명(발암성)
마황산가스(SO ₂)	암모니아(NH ₃)	비소(As) (A)
미산화질소(NO ₂)	염화수소(HCl)	카드뮴(Cd) (B1)
미세먼지(PM ₁₀)	아세트알데히드	6가크롬(Cr ⁶⁺) (A)
오존(O ₃)	염화수소(HCl)	니켈(Ni) (A)
납(Pb)	수은(Hg)	벤젠 (A)
일산화탄소(CO)		
다이옥신		

[표] 소각장 건강영향 평가물질

- *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류의 경우는 인체위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중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도의 위해성 평가 없이 현행 환경영향 평가방법을 준용

교육환경평가³⁾

1. 교육환경평가의 정의

-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교육부 정의: 학교의 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 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한 후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용지를 선정하고,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제도

2. 교육환경평가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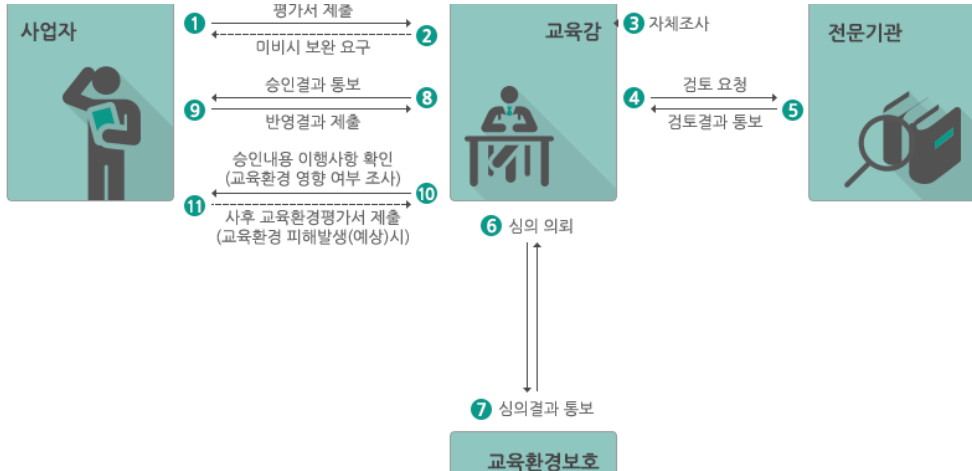
- 학생들이 학교에서 밝고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과 위험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학교조성을 위함
-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공사 후 변화된 주변환경에 의한 학습환경의 위해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존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지속하기 위함
- 학교친화형 도시계획 및 정비사업을 유도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3. 교육환경평가의 법적근거

- 16.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17.2.4 시행)으로 학교설립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16-19조, 시행규칙 제2-3조

3) 법이 2017년 2월 제정되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교육환경평가 주체와 절차



- 평가서 작성

- 작성자

-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의 입안자
-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주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5)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 작성내용

- (1) 교육환경평가서 요약문
- (2)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
- (3)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4)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5)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 평가서 검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
- 평가서 심의 및 승인: 시·도(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 승인
- 학교용지 선정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됨. 제출된 평가서는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며, 교육감은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제출자에게 통보
- 교육환경평가의 작성 대행기관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이 없음. 교육환경평가는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평가서 제출 및 평가서 검토결과 통보는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야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음

5. 교육환경평가의 대상

평가시기:

-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 다만,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21층 이상 또는 10만m²이상)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

평가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에 따른 학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용지 또는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용지의 학교설립예정지

고용영향평가

1. 고용영향평가의 정의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 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

2. 고용영향평가의 목적

- 고용영향평가는 국가 및 자치 단체의 주요 사업, 정책, 법, 그리고 제도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고용친화적인 추진과 예산 작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한 지원정책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제기
-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지표가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되면서 주요 정책, 사업이나 법과 제도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성 증대

3. 고용영향평가의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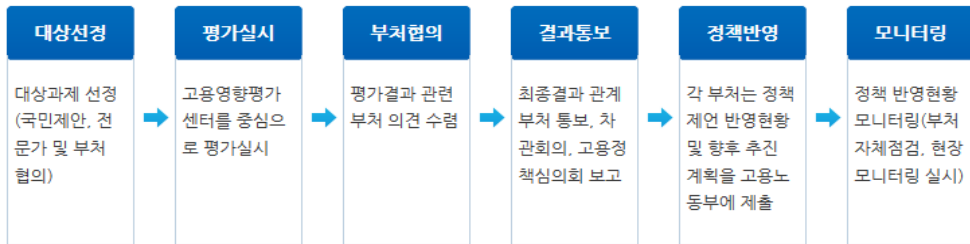
-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23조’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0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본격적인 평가 시행
- 2013년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을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로 지정하고 평가인력 확충 및 ‘고용영향평가지침’ 수립

4. 고용영향평가 주체

- 고용영향평가는 정량·정성적 방법을 토대로 대상 정책과 고용의 연계성, 정책 시행으로 예측되는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적 변화 등을 분석하고 평가.

- 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상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
-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고용노동부장관 지정·고시)
- 2017년에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전담수행

▶ 평가절차



- 고용영향평가의 절차, 범위와 내용(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연구 보고서 7-12쪽)

5. 고용영향평가 대상

- 평가의 대상은 아래 네 가지 중 하나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이거나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가하기로 심의한 정책
-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책
-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인 한국노동연구원은 대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
- 고용률 70%로드맵 추진과제 등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 인프라, R&D, 산업육성, 노동, 복지, 관광 분야 등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제도, 규제개선 정책
- 민간단체(경제단체, 노조, NGO 등) 및 일반국민이 제안하는 과제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로부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1차적으로 연구자가 구성한 아동영향평가 지표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의 검토의견과 정책제안을 받아 아동영향평가 시범사업에 활용 가능한 평가 지표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2차 질문지는 1차 조사 결과가 반영되었으며 아동영향평가의 지표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여해 주시는 패널 분들의 인적사항은 상호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이는 각 패널이 독립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패널들 사이에 점진적인 합의과정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본 설문지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를 위한 통계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I. 성과 영역

분야	평가 대상		정량지표	요인선정 적합정도				
				① 매우 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 적합
건강 · 안전 · 여가 · 역량 · 보호 · 돌봄	법·조례 / 계획	아동 직접 대상	소수 집단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아동 간접 대상	전체 의견 수렴 중 아동 의견 수렴(반영) 비율					
			전체 필요 욕구 중 아동 필요 욕구 수렴 및 반영 비율					

■ 영역별 아동대상 사업 예시

1. 건강

- 필수예방접종 지원
-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
-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 사업
- 학교 주변 간접흡연 제재 정책
- 편의점 대상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교육

2. 안전

- 아동카시트 장착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 자전거 이용 아동 안전 헬멧 지원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시설/미끄럼 방지시설/신호등 차단시설 설치
- 보육시설, 방과후돌봄시설, 키즈카페 등 안전인증제
- 마을안전지도 작성(성인, 아동 관점) 추진
- 아동대상 각종 폭력, 학대, 방임 가해자 처벌 및 관리

3. 여가/문화

- 서울시 체험형 놀이터 운영
- 도서관 및 운동장 확대
- 아동 문화카드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문화 바우처
- 동반 가족 비용 할인 제도

4. 역량

- 인권 교육 및 인성 교육
- 교육 멘토링 제도/학습보조 교사 제도
- 진로 직업 체험 및 대안교육
- 맞춤형 방과후 교육

5. 보호

- 아동보호체계 종사자 전문 보수 교육 개발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추가 설치
- 아동학대 및 방임 발생 신고 및 조치
- 위기가정 발굴체계와 아동학대예방센터 간 협업
- 시설생활아동 대상 공동생활가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

6. 돌봄

- 가족폭악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 동생행복프로젝트
- 중학교 방과후공부방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자기주도학습관 운영

① 건강					
내용	적절성				
전체 아동 중 소외집단 아동 의견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소수 집단별 아동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연령대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건강서비스 예상 수혜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건강서비스 예상 수혜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건강서비스 예상 수혜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건강서비스 예상 수혜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의료혜택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고위험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깨끗한 공기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깨끗한 물섭취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소음 증감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 영양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취침 및 기상시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일상생활 리듬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 질병(알러지, 천식 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정신, 신체, 감정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장애 아동(발달, 지체 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0			
내용	적절성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 행복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 음주/흡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의료기관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의 상담 가능한 어른 확보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② 보호					
내용	적절성				
전체 아동 중 소외집단 아동 의견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소수 집단별 아동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연령대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보호서비스 예상 수혜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보호서비스 예상 수혜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보호서비스 예상 수혜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보호서비스 예상 수혜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 차별 및 착취 보호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 학대 및 방임 보호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가족과의 인위적 분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장애 아동에 대한 기회 확대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의 표현, 생각, 양심, 종교의 자유 권리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실행 보호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의 사생활 보호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의 정보 이용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장애 아동의 이동성 보장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또래 간 폭력 예방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 학대 또는 폭력 피해 시, 보호자 또는 관리자 확보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각종 폭력 보호에 필요한 기관 인지 및 확보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③ 안전					
내용	적절성				
전체 아동 중 소외집단 아동 의견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소수 집단별 아동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연령대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안전사고 예상 감소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0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안전사고 예상 감소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안전사고 예상 감소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안전사고 예상 감소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적절한 주거환경 및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 학대, 방임 또는 위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안전에 대한 표준 엄수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의 안전한 이동성(등하교 등) 보장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납치 및 유괴에 대한 안전성 보장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안전성 보장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가족 없는 아동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경제적 착취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성 보장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약물 생산 및 오남용에 대한 안전성 보장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0			
내용	적절성				
성적 착취에 대한 안전성 보장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법적 기준에 대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무력충돌 또는 전쟁에 대한 안전성 보장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교통체계 및 보행자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안전체계 인지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인터넷의 위험성 인지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지역사회안전망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 안전교육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가정/보·교육기관의 안전실천 및 의료처치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가정/보·교육기관의 안전예방 및 위험대응능력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가정/보·교육기관, 놀이 및 여가 환경의 안전사고 인지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지역사회 환경(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만족, 비공식적 사회통제, 지역사회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깨끗한 공중 화장실 조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환경 오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④ 여가					
내용	적절성				
전체 아동 중 소외집단 아동 의견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소수 집단별 아동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연령대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문화활동 예상 참가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문화활동 예상 참가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문화활동 예상 참가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문화활동 예상 참가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놀이 및 여가 관련 권익 향상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의 자발적 스포츠 참여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의 놀이문화, 이동권, 삶의 터전 제공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 취미활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가족과의 교류 시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의 종교 생활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운동 및 여가 활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문화·예술 시설 (영화관/공연장/전시관/박물관/도서관 등) 이용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체육시설 (운동장/실내 체육관/수영장 등) 이용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놀이시설 (놀이터/공원/산책로/실내 놀이장/캠핑장 등) 이용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자연 녹지 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설 프로그램 참여 또는 단체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교내 여가 시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가정 내 여가 시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또래 집단 교류 시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⑤ 역량(사교육, 방과후 교실 등 포함)					
내용	적절성				
전체 아동 중 소외집단 아동 의견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소수 집단별 아동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연령대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교육활동 예상 참가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교육활동 예상 참가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교육활동 예상 참가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교육활동 예상 참가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교육 과정 중 자신감,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양육에 적합한 거주지 조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역량발휘를 돕는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학교 및 자치단체의 참여정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가족의 생활비 변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주거 또는 레저/교육/교통/쇼핑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보육 및 학교 서비스 개선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공립/사립학교 소속 아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대안학교 소속 아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특수학교 소속 아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공교육 소속이 아닌 아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임금 노동을 하는 아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자발적 업무를 하는 아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또래관계, 어울림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학교 재학 유무 또는 중단 계획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학교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희망 교육 수준 변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교사의 학생 관심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교육자료 (교과서; 학용품 등) 확보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학교 내 건강교육, 환경교육, 권리교육, 성교육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0	
내용	적절성				
사교육 이용 (학습, 문화/예술, 취미, 체육 등) 변화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방과후 활동 (방과 후 거처, 방과 후 주양육자, 평일 방과 후에 주로 하는 활동, 평일 방과 후 아들이 하고 싶은 활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문화/예술, 취미/특기, 과학/정보, 모험/개척, 환경/보호, 직업/능력, 자원 봉사, 재능기부 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직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진로 성숙도 또는 계획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전반적인 인지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전반적인 언어 발달수준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학업성적(학업 역량)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친구들과의 협력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학교/지역사회 시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아카데미/수련관) 및 프로그램 품질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학교/지역사회 시설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⑥ 돌봄					
내용	적절성				
전체 아동 중 소외집단 아동 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소수 집단별 아동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연령대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돌봄서비스 예상 참가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아동인구 대비 소수 아동 돌봄서비스 예상 참가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아동 돌봄서비스 예상 참가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사업대상 전체인구 대비 소수 아동 돌봄서비스 예상 참가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여가 및 놀이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보활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부모 또는 양육자의 양육활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부모 또는 양육자를 위한 물질적/사회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부모 또는 양육자를 위한 정보 제공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부모 또는 양육자의 소득 수준 변화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과 부모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부모를 제외한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기회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의 교우관계 또는 집단 활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이익집단 간 갈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지역정체성 또는 집단의식 향상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둘 이상의 부모 또는 양육자를 가진 아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한부모 아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홈리스 아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각종 치료시설에 사는 아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실업상태 부모와 사는 아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부모의 아동 관련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공적 돌봄 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 관련 의견을 적어주세요.

• 건강 영역 정량·정성지표에 추가할 요인과 이유 그리고 기타 의견을 적어주세요.

• 안전 영역 정량·정성지표에 추가할 요인과 이유 그리고 기타 의견을 적어주세요.

• 교육 영역 정량·정성지표에 추가할 요인과 이유 그리고 기타 의견을 적어주세요.

• 여가/문화 영역 정량·정성지표에 추가할 요인과 이유 그리고 기타 의견을 적어주세요.

• 보호 영역 정량·정성지표에 추가할 요인과 이유 그리고 기타 의견을 적어주세요.

• 돌봄 영역 정량·정성지표에 추가할 요인과 이유 그리고 기타 의견을 적어주세요.

II. 기반영역

참여 영역 정책방향

- ① 아동참여 기반 구축
- ② 아동 참여기구 재구축 및 활성화
- ③ 모든 생활에서의 아동참여 활성화

존중 영역 정책방향

- ① 아동의 기본 권리 존중 실현
- ② 취약계층 아동의 권리 존중

분 야	평가 대상		공통 정량지표	요인선정 적합정도				
				① 매우 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 적합
참 여	법·조례 / 계획	아동 직접대상	소수 집단별 아동 비율					
		아동 간접대상	전체 수혜자 중 아동 비율					
	단위사업 / 세부사업	아동 직접대상	소수 집단별 아동 비율					
		아동 간접대상	전체 수혜자 중 아동 비율					
			전체 수혜자 중 소수 집단 아동 비율					
존 중	법·조례 / 계획	아동 직접대상	소수 집단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연령대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아동 간접대상	전체 대상 중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소수 집단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연령대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단위사업 / 세부사업	아동 직접대상	소수 집단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연령대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아동 간접대상	전체 대상 중 아동 의견 반영 비율					
			소수 집단별 아동 의견 반영 비율					

■ 존중 영역 정량지표에 추가할 요인과 이유 그리고 기타 의견을 적어주세요.

① 참여					
내용	적절성				
청소년 중 참여 청소년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청소년 참여율 및 청소년 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전체 아동 중 소외집단 아동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특정 유형 아동 배제 또는 차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장치 향상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의 정보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학생조직 참여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학생조직 참여권에 대한 학교 및 사회의 존중도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여부 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결사(사회문제 중심 인터넷 카페; 조직; 동호회 등) 및 집회 참여 여부 및 횟수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기간, 시간, 급여 등)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르바이트 피해 (임금체불; 시간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작업환경 위험/불결; 폭언 등 인격적 모독; 구타나 폭행; 성적 피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개선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봉사활동 (일손돕기; 위문활동; 캠페인; 환경보존; 지역사회 개발 등) 경험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 시, 아동 참여 및 존중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학교 내 주요 의사결정 시, 아동 참여 및 존중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지역사회 의사 결정 (정책, 예산 등) 시, 아동 참여 및 존중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소셜 미디어 활용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지역사회 정보습득통로 (인터넷, TV, 소셜미디어 등) 구축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 관련 의견을 적어주세요.

② 존중					
내용	적절성				
연령대별 의견 반영 비율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권리 홍보 (인지 수준, 만족도, 정책 홍보자료, 아동인권정보, 지원 기관 등) 활동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권리 인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권리 및 시민의식 교육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권리 보장 제도의 인지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 인권기관(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 기관)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UN아동권리협약/아동인권조례/아동친화도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 권리 인지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가정, 학교, 지역주민, 국가 내 사이버공간의 아동권리존중 정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차별 및 피해 (성별, 학습, 인종/민족성, 나이, 장애, 종교, 사회경제적지위 등) 정도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내용	적절성				
아동의 주요 권리 (결사 및 집회, 의사표현, 사회참여,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성, 종교선택권, 사회보장, 교육권, 장애인입학가능여부, 고문/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소년범죄처리 등) 존중에 미치는 영향	① 매우부적합	② 부적합	③ 보통	④ 적합	⑤ 매우적합

■ 관련 의견을 적어주세요.

■ 영역별 아동대상 사업 예시

1. 참여

- 아동의회 설치 관련 사업
-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 교육공무원 대상 아동참여 및 권리 교육

2. 존중

-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추진단
- 청소년참여예산제도 운영
- 자유학기제 실시 학년 재학생을 위한 문화체험 지원
- 아동 소송 대변인제도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2017 정책연구 - 06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발행인 강경희
연구자 송이은
발행일 2017년 12월
인쇄처 행복한나무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ISBN 979-11-87956-36-5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代)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림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